2021 공인회계사 KACPA JOURNAL

Vol.22

KOREAN-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KACPA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Korean-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Member FDIC

hanmi.com/ko/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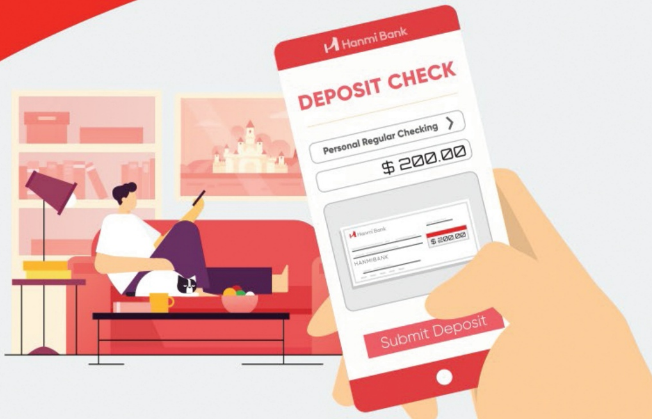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은행이 된다.

더욱 스마트해진 한미 모바일 뱅킹!

체크 입금은 사진을 찍어서 편리하게,
계좌 이체는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자동결제로 각종 요금 납부도 알아서 척척,
내 계좌를 안전히 지켜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까지,
이제 은행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뱅킹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Hanmi.com/ko/mobile을 방문하세요.

Hanmi Bank

KACPA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Korean-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2021 KACPA Journal Vol. 22

편집: Peter M. Sohn, CPA

Bank of Hope

HOPE. 그것은 하나의 단어를 넘어서,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꿈꾸고 있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고, 미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객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이 있습니다. Bank of Hope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희망을 응원합니다. Bank of Hope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뱅크오브호프 온라인/모바일 뱅킹에 등록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좌를 관리하세요.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Kevin S. Kim, *Chairman & C.E.O.*
Bank of Hope

안녕하세요?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 행장입니다.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의 연간 저널 '공인회계사' 제 22호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는 지난 40여년간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모범 단체로서, 회계 및 세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매년 발간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의 세무 회계 이슈 및 트렌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에 따라 긴급하게 이뤄진 정부의 지원 정책 시행으로 인해, 저희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 뿐 아니라 회계 전문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및 사업주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커뮤니티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이끌고 계신 저스틴 오 회장님 이하 협회 임원진 여러분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들의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뱅크오브호프도 '한인사회 대표 은행'에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최고의 금융인(Bankers), 차별화된 전문가(Experts), 그리고 좋은 이웃(Neighbors)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S. Kim
Chairman & Chief Executive Officer
Bank of Hope


Permanent Innovator Mirae Asset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는 한국의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여 탄생한
"미래에셋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식 Stocks
채권 Bonds
뮤추얼펀드 Mutual Funds
ETF Exchange Traded Funds
재정 플랜 Financial Planning
현금 관리 Cash Management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저희는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는 자산관리자(Fiduciary)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의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6th St.
Wilshire Blvd.
8th St.
S Western Ave.
S Oxford Ave.
S Serrano Av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상담 및 문의
(213)700-7378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유가 증권 및 투자 자문 서비스는 등록 된 브로커 딜러이며 투자자문회사인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를 통해 제공됩니다. FINRA / SIPC 회원.
캘리포니아에서의 보험 서비스는 회사의 DBA 이름인 MAWM Insurance Solutions을 통해 제공됩니다. CA License No. 0N08558.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는 고액자산가인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개, 자문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자산관리회사입니다.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Inc.는 Mirae Asset Financial Group의 계열사인 Mirae Asset Daewoo의 자회사입니다.
MACL0120201021

Justin C. Oh, *President*

역설적인 말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움직임은 인간적 유대의 간절함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공인회계사 협회의 행사를 통한 만남도 불가능한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음을 위안으로 느끼며,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22회 연간저널 '공인회계사'를 발간합니다.

"진정한 21세기는 코로나19로 시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 온 생존 방식에 대전환이 요구 된다는 뜻입니다. 유사 이래 대전염병의 전파에 따른 기존 질서의 해체는 문명의 도전을 불러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향한 이정표에 회계/ 세무 및 경제에 도움을 제시하는 지면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저널은 앞으로도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협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가주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좀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한국일보 후원을 통해 신문 지면에도 저널에 연재된 글을 실게 되었으며, 전미주 모든 한인 공인회계사께도 이 저널이 분배 될 수 있어 명실공히 미전역에 회계/ 세무 및 경제 전문지로 역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독자께서 이 저널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한 한인 커뮤니티에 결속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지혜를 공유하는 저널이 되길 바라며, 여기에 참가해 주옥같은 글을 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이를 후원해주신 스폰서 그리고 한국일보 및 나은숙 전미주총회장님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이 저널에 출판될때까지 온 힘을 다해 힘써주신 출판위원장 손명신/이경훈 회계사님과 선배 회장님, 이사님, 임원님, 그리고 협회 회원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스틴 오,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Justin C. Oh, *President*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HAN & PARK LAW GROUP, INC.
www.hanparklaw.com
HP HAN & PARK
LAW GROUP, INC.
유산상속법 상속재판전문
박유진 변호사
“현명한 재산 지킴이 – 박유진 변호사”
저희 로펌은 유산상속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 계획
■ 리빙트러스트(신탁)설립 (Revocable Living Trust & Irrevocable Living Trust)
■ 유언장/위임장 작성 (Will & Power of Attorney)
■ 자선 신탁 설립 (Charitable Trust)
■ 장애인 특별신탁 (Special Needs Trust)
■ 생명보험 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 국제 상속 계획 (International Planning)
■ 비 시민권/영주권자 상속계획 (Planning for Non–Citizens)
회사법
■ 회사 상속 계획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 법인 (Corporation), 유한법인 (LLC) 동업회사 (Partnership), 지/상사 설립
■ 비영리단체 설립 (Non–Profit Organization)
■ 사단법인 설립 (Private Foundation)
■ 사업매매 계약서 작성 (Business Agreements)
상속재판 & 상속집행
■ 상속절차진행 (Probate Administration)
■ 상속분쟁 (Probate Administrator & Trust Administration)
■ 상속대리인 집행 (Personal Representative & Successor Trustee Service)
■ 보호자 혹은 후견인 설정 (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Tel: 213.380.9010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LA
HP HAN & PARK
LAW GROUP, INC.
OC
Tel: 714.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 90621
E-mail: info@hanparklaw.com

위기 안의 성장 기회

나은숙 미주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회장
KCSCPA 회장 & Alisa Na CPA, P.C.

안녕하세요, 2020년 KASCPA 회장, 나은숙 입니다. 오랜 역사의 단합된 남가주 공인 회계사 협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Covid-19 의 확산으로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요즘, 흔들림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회계사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 회장님께서 연말 인사 원고를 부탁하셨을 때, 회계사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공감하며 나눌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 모두가 향후 달라질 경제환경에 대한 염려와 그에 따른 회사 운영 계획을 고민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 회사의 브랜드, 가치(Vision) 구축과 직원채용

저희 회사는 Brand, Vision, Mission Statement, Core Value 를 신중히 고려하고, 시기와 근무 환경에 맞는지 분기마다 모두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동안 고객님들과 직원들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많은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소통되는 요즘, 서비스 질에 대한 고객분들의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반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항상 숙제입니다. 회사를 운영해오며 제가 절실히 느끼는 점은, 회사의 가치관 (Vision)을 함께 공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직원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회사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저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2.직원의 업무량 조절 – Outsourcing Payroll Service

저희 한인 회계사 업무의 특성 상, Low Fee / High Volume Client Base 로 운영이 되다 보니,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직원들 모두가 과다 업무량에 지치고,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효과적

으로 조정하기 위한 변화로 외주 페이롤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많은 장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페이롤 관련 업무 (Payroll Processing, Quarterly Tax Filing, Annual W2/W3 등) 를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였고, 이는 계속 변화되는 까다로운 Payroll Compliance 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외주 페이롤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추가되는 운영 비용이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고, 또 이 비용이 부득이 저희 고객분들의 서비스 비용 인상으로 연결되다 보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감일 내에 처리해야하는 리포트 (Quarterly and Annual Filing Forms) 업무에 대한 시간적인 압박과 그에 대한 Liability 문제들이 해소되었고, 덜어진 업무량과 효율적인 업무시간 관리가 가능해짐으로 직원들이 각자 담당한 고객분들의 비지니스에 개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며, 고객 만족도와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 갔습니다.

3.꾸준한 시스템 개선과 투자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정확한 서비스는 모든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마다 새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나 오피스 시스템 도입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투자 했습니다.

그 덕에 이번 택스 시즌 도중 Covid-19 사태로 사무실을 오픈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 전환과 고객님들과의 Contactless 소통이 어려움없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10월까지 연기되었던 세금보고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난 위기가 있었기에 변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 개선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정신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은 어려운 시간이였지만,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노력하며 함께 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위기속에서 빨리 적응하고 대처하는 사업가들이 성공 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Covid-19 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헤쳐 나가야할 저희 고객분들의 회계사 (Advisor)로서 무거워진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든 회계사님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멈춤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udit and Peer Review

- Tax Planning Following The Tax Cuts and Jobs Acts -

최기호 공인회계사

CPA!!! Constant Pain in the Ass? Maybe, but, we are definitely better than that!

"CPAS are extremely important persons who are certified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and trust."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 하는 파수꾼……………

Public Interest 와 Trust ? 왜 CPA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바로 투자대상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믿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우리 CPA는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재고시켜 왔으며, 그 결과 자본 시장 경제 시스템 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일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CPA의 꽃이라는 회계감사부문 역시 강화되는 각종 규제와 통제를 피할 수 없었고, 특히 우리 KACPA와 같은 중소규모의 회계법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온 게 현실입니다. 매년 추가되는 PCAOB의 감사기준과 점점 강화되는 Peer Review로 인해 감사 업무량과 비용은 증가하는데 반해, 점점 치열해지는 가격경쟁으로 우리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 하자니 Audit Hour 필요한 CPA candidate 후배들은 audit 없어 일 못하겠다 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니 난감해지는 고민도 당연히 동반됩니다.

Pandemic 이 끝나도 한동안은 경제위축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 역시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걸로 보이며 고객회사에 요구하는 Financial Statement 역시 Compilation report에서 Review report 혹은 Audit report로 더욱 상향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항상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Peer Review에 관해 관련된 규정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AICPA는 Peer Review를 System Reviews와 Engagement Reviews, 이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System Review는 system of quality control을, Engagement Review는 particular selected engagement work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ystem Review는 아래 나열된 규정에 의거한 Attestation Engagement를 제공하는 모든 AICPA member에게 적용됩니다.

- the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SASs,);
- the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Yellow Book),
- the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SSAEs); or
- the PCAOB standards.

특히, Engagements performed under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audits of employee benefit plans, audits of depository institutions (with assets of $500 million or greater), audits of carrying broker-dealers, and examinations of service organizations (SOC 1® and SOC 2® engagements) 업무를 하시는 회원은 반드시 System Review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reviewer는 다음의 절차를 실행합니다.

- examine engagement working paper files and reports;
- interviews selected firm personnel;
- reviews representations from the firm;
- examines selected administrative and personnel files;
- examines CPE records;
- examines outside consultations regarding A&A matters, if any;
- examining independence representations;
- testing a reasonable cross-section of the firm's engagements with a focus on high risk engagements and significant risk areas.

먼저 우리는 AICPA 가 강조하는 "SYSTEM"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 말하는 SYSTEM 은 Rocket Scientist에게 화성 탐사를 위해 요구되는 완벽한 System구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ICPA의 "System"을 "The System presents the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the CPA firm has designed, and is expected to follow, when performing its work"이며, Peer reviewer의 objective는 "determine whether the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conformity with professional standards and whether the firm is complying with its system appropriately."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Conformity with Professional Standards입니다. 예를 들어,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 는 아래 10 elements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General standards: As an auditor,

- you must have both adequate training and proficiency.
- You are independent in both fact and appearance.
- You exercise due professional care in performing your auditing tasks.

Standards of fieldwork:

- Your work is adequately planned, and all assistants are properly supervised.

• You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lient and its environment, including internal controls, to assess the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o plan your audit.
• The evidence you gather during the audit is appropriate and sufficient to evaluate management's assertion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Standards of reporting: The last four GAAS concern information you must consider prior to issuing your audit report:
• You have to state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using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 Just as important is to report whether GAAP are consistently applied for all financial accounting. Should this not be the case, you have to report any departures.
• You also have to make sure that disclosures— any additional information needed to explain the number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 are provided.
• Lastly, you have to include your opinion as to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present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company under audit.

위에 언급된 standard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Standard of Fieldwork 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사는 management가 제시한 assertion 즉, financial statement 에 material misstatement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material misstatement 가 발생할 수 있는 account 와 balance 에 충분한 audit evidence를 확보하여 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Standard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내에 모든 standard 를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QC policy를 수립한 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CKP도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갖춘 회계감사'라는 Mission을 이루기 위해 그 동안 System 구축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CPA가 요구하는 System 구축이 우리 회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힘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반입니다. 우리 모두 Nike 의 motto 처럼 "Just Do It!" 합시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손성수 영사
LA 총영사관

올해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유례없는 비대면의 생활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소매업, 여러 서비스업종 등 대면영업이 불가피한 많은 경제분야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31.4%에서 3분기 33.1%으로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여 새로운 비대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재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은 식당실내영업금지,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타격을 받은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올해 4월에 경제단체들과 함께 피해 상공인/기업을 위한 임대료 감면요청 레터를 5차례 발송하였고, 포장/배달 가능한 한인식당 800여곳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언론사 및 한인단체를 통해 '한인 식당 알리기 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 정부의 긴급경제 지원방안을 잘 이용하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및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KACCOC)와 함께 PPP Loan(고용 유지 자금지원)과 EIDL(긴급피해지원대출)을 설명하는 유투브 영상을 4월에 4회에 걸쳐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Fiona Ma 가주재무장관(4.15)과 존 리 LA시의원(5.29)을 각각 초대하여 경제지원방안 온라인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미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역제품수출, 식품수출, 한미FTA, 비즈니스회계, 노동법, 사이버 보안, 온라인 마케팅, 미국 진출 법률 이슈, 드론산업 등 6월 이후 9차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누계 1,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키트 등 방역제품의 수출을 돕기 위해 22개사 130여 품목의 제품리스트를 만들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장으로 시작한 리스트가 이제는 63페이지에 이르고, 약1,800회 조회되었습니다. 실제 계약이 성사되어서 한국 방역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좋은 소식도 종종 들려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약 8개월간 겪은 후 이제 돌이켜보니 새삼 느끼게 된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3월에는 재택근무도 많이 했고 매일 코로나19 확산 뉴스에 긴장되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곤경에 처한 많은 동포분들이 있었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경제영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 동포단체에서 많은 도움과 아이디어를 보내 주셨습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한인무역협회(OKTA),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관세무역연구포럼, 한미택스포럼, 한인물류협회, 한식세계화협회 등 많은 단체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긴급 경제 지원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거나, 여러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주시고 대미 수출 또는 현지 기업들과 상담해 주시고, 많은 홍보활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총영사관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사업들이 동포 경제 단체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러 동포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글을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동포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박경재 총영사님의 지시로 동포 상공인들이 미 정부의 Grant와 대출 프로 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약 30개의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지난 9월에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보신 한 경제단체 임원분께서 고령자는 영어로 하는 Grant신청이 불편하니 번역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Grant 신청 영어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며칠 만에 12분이 흔쾌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 9월 이후 Grant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모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주위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원봉사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저의 생각보다 아주 많았습니다.

영어도우미 자원봉사 모집에 힘을 얻어, 이제는 전문 컨설팅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세,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저에게 한국 또는 현지의 기업인/상공인 분들이 대미 수출 절차와 각종 인증/허가 방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LA총영사관은 '대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러한 분들에게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물류기업, FDA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위 분들에게 요청드렸더니 벌써 1주일 만에 34명이 지원하셨고, 그 중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소속 CPA분들이 13명이나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의 시대는 서로 만날 수 없어 친밀감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또는 미국 타 지역의 기업/상공인들과 화상 또는 전화로 교류하고, 동시에 다수와 미팅을 하기에도 훨씬 용이합니다.

LA총영사관에서 시도하는 대미 수출 지원 무료 상담 서비스처럼 비대면으로 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킹 기회를 발굴 한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비즈니스를 재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과 동포사회에 도움을 주는 보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금 탕감 신청서 작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고찰

오영균 공인회계사

예상치 못한 Corona Virus로 인해서 3월 이후 현재까지 정부 당국의 지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함으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받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 국회가 금년 3월 27일 부로 Corona Virus Aid, an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라는 법령을 만들고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SBA를 주관처로 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 (PPP Loan)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PPP Loan 신청서 접수가 마감일인 8월 8일까지 총 5250 억불의 융자금이 종업원 수가 500명 미만 되는 5,200,000에 달하는 중소 기업인들에게 허락되었는데 이 중에는 많은 한인 기업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PPP LOAN 은 허용된 기간 (Covered Period) 내에 융자금을 임금을 포함한 지정된 비용에 사용하면 융자 액수 100%가 탕감되는 조건이 있기에 2020년 6월 5일자로 공포된 SBA의 잠정 최종 법 (Interim Final Rule)을 근거로 하여 융자금 탕감에 관계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점에 연관된 문제들을 고려해보려 한다.

1. PPP Loan의 융자 조건

융자 만기일은 5년이고 연 이자율은 1% 인데, 이자는 융자가 지급된 날짜부터 계산되며 융자금 상환 첫 Payment는 SBA Loan 수령자의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확한 탕감 액수가 결정된 후, 융자금을 지급한 은행을 통해서 수령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2. PPP Loan 탕감 신청서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마감일

탕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융자금 해당비용 사용기간 (Loan Forgiveness Covered Period) 이 끝난 날짜부터 10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비용 사용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짜부터 24주 (168일) 를 말하는데, 6월 5일 이전에 받은 융자는 8주 (56일) 가 Covered Period이지만 24주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탕감 신청서는 SBA Form 3805를 사용하여 작성하는데, 융자금이 $50,000 이하인 경우에는 작성이 훨씬 쉬운 Form 3805EZ, 또는 최근에 나온 Form 3805S를 이용하면 된다. 예로 신청 마감일을 설명하면 6/25/2020일자에 융자를 받은 사람은 해당 탕감비용 사용기간이 24주 (168일)가 끝난 날짜로부터 10개월 되는 날, 즉 10/10/2021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PPP Loan 탕감 조건과 관련된 문제들

융자금 탕감 혜택을 보려면 해당비용 사용기간 (Forgiveness Covered Period), 즉 6/5/2020 이전에 받은 융자는 8주, 그 후에 융자는 24주 내에 융자액수의 최소 60%를 임금비용으로 나머지 40%는 임금이 아닌 다른 비용 (Non-payroll Costs)으로 사용하면 융자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100% 탕감 받을 수 있다. (Interim Final Rule)

(1) 임금비용: 사용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휴가수당, 고용주가 부담하는 Payroll Taxes, 은퇴자금 불입금 (Pension 또는 401K) 및 고용인 의료 보험료가 포함된다. 자영업자나 Partner, 또는 법인체의 주주 겸 직원으로 일하는 Owner-employee들은 24주 Covered Period인 경우에는 2019년에 받은 연봉의 2.5개월에 해당하는 봉급액수를 탕감임금으로 계산하되 한 사람당 $20,833을 넘지 않는 선에서, 8주 Covered Period를 선택한 경우에는 2019년 받은 연봉액수의 8주에 해당하는 액수를 탕감임금으로 사용하되 $15,385 를 넘지 않는 액수로 임금 계산을 해야 한다.

(2) Non-Payroll Costs: a. 임대료와 기구 Lease Payments b. 전열비 (Utilities) 및 c. 사업체가 빌린 각종 융자금 Payments 중에서 원금이 아닌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3) 임금 비용 사용 액수가 60% 미만일 때의 탕감 액수: 예를 들어

융자금이 $50,000인데, 임금 지출액이 $25,000 (50%)일 경우에는 Non-payroll Cost 도 원래 $20,000의 83.33%인 $16,667로 줄어 총 탕감액은 $41,667 이 된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임금 $25,000을 60%로 나누면 같은 답이 나온다.

(4) 융자금액 $50,000 미만에 사용하는 SBA Form 3805S의 특징: 같은 $50,000 미만에 사용하는 Form 3805EZ 와는 달리 탕감액수를 비용별로 인건비 얼마, 임대료 얼마라는 항목별 표기를 하지 않고 총 탕감액수가 얼마라는 한 숫자로 기입하게 되 있어 신청서 작성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숫자 기입절차는 간소화됐지만, 탕감액수를 뒷받침해주는 임금에 관한 분기별 IRS Payroll Tax Return #941과 주 정부 EDD에 보고한 DE9C를, 그리고 Rent와 Lease에 관련된 계약서 사본, 기타비용을 뒷받침해주는 Invoice 사본 등을 탕감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또한 융자금액 $50,000 미만에 대한 탕감 신청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임금 액수는 입증서류로 확증된 전액을 삭감 또는 조정없이 인정해준다는 점이다. ($50,000 이상의 융자금액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지불한 임금액의 하향조정 계산이 필요하다.)

4. 융자금 $50,000 이상 되는 경우의 탕감 신청서에서 요구되는 임금액의 하향조정 조건들과 복잡한 계산

$50,000 이상의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해당비용 사용기간에 고용한 직원 수 또는 연봉액수로 $10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고용인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가 1/1/2020~3/31/2020 기간 (Corona Virus 발생이전)이나 2019년 같은 기간에 고용인원 수와 지불한 임금 액수에 비해서 25%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종의 벌칙으로 해당비용 사용기간 (Covered Period)에 지불한 임금 액수를 떨어진 비율에 맞추어서 하향 조정 (Reduction)하게 되어있다. 기사 지면 제한으로 복잡한 계산 법을 다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자면 1/1/2020-3/31/2020 기간에 지불한 고용인 한 명 한 명의 시간당 급여 (Hourly Rate)나 월급 (Salary)의 75%를 계산하여 이 숫자와 비용 사용기간에 지급한 같은 숫자를 비교하여 두 숫자에 차이가 없으면 임금하향 조정이 필요없고, 차이가 있 으면 차이가 난 숫자로 24주 또는 8주에 해당하는 삭감치를 계산하여 탕감 계산에 핵심이 되는 임금 액수를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다. 예로 설명하면 고용인 A가 Corona 이전에 받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25이었는데, Covered Period에 지불 받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 $18로 떨어졌다면 25x0.75인 $18.75보다 $0.75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간 40 시간제로 계산하여 24주에 해당하는 $720 ($0.75x40x24)을 임금 액수에서 삭감해야 한다.

고용인원 수가 떨어진 경우에는 벌칙을 면해가는 몇 가지 예외 규칙들이 있는데 한 예로 Covered Period에는 고용인원 수가 떨어졌는데 Covered Period가 끝나가는 무렵에 다시 고용인 수를 늘렸거나, 잠시 내보냈던 사람에게 다시 일 나오라는 통지서를 내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을 면제 받는 Safe Harbor Rule이 있으니 신청서 작성서에 첨부되어 있는 지시서를 잘 참고해야 된다.

5.탕감 받는 융자금에 대한 세금보고서 처리 문제

탕감 받은 융자금이 차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득 (Income)이 됨에는 틀림이 없는데, CARES Act는 분명히 탕감된 액수가 연방 소득세법상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수입 (Gross Income)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반대로 IRS는 4월 30일 날짜로 Notice 2020-32를 공포했는데, IRS Section §265 조항을 인용하면서 PPP 융자금에서 탕감 받은 액수에 연관된 임금 및 기타 비용들은 세금보고상에서 공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IRS Section §265 조항은 "세금면제를 받은 소득에 연관된 비용은 공제항목으로 인정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IRS 입장에 대해서 미국공인회계사 협회 (AICPA)를 위시한 많은 상원의원들과 단체들이 미국 재무부와 국회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내며 IRS Notice 2020-32 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회계처리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IRS는 탕감된 융자금은 장부상 없어지되 탕감에 사용된 임금과 그 외의 비용들과 상쇄되며 세금 보고서 작성시 해당되는 비용을 삭감함으로써 2 중 공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AICPA나 기타 단체들은 탕감된 융자금액은 장부상 에서 없어지되 채무자 업체의 자기자본 (Capital 또는 Equity) 계정에 처리 해줌으로써 침체된 경제상태로 침식된 업체의 자기자본 계정을 회복시켜주어 소상공인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는 한 방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6.탕감 신청서 제출하는 시기점에 대한 고려

제2항에서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의 탕감신청서 마감 날짜는 2021년 8월 이후가 되는데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변수는 이자인데 (이자는 융자 받은 날짜부터 시작) 연이자율 1%이기 때문에 이자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50,000 이하의 융자의 경우는 신청서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IRS Notice 2020-32 문제 외에는 변동 사항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에 받은 연봉의 8주에 해당하는 액수를 탕감 받게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Covered Period가 24주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탕감비용이 24주에 해당하는 액수로 시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50,000 이상의 융자금액을 받은 업체나 채무자의 경우에는 4항에서 설명 드린 대로 임금 하향조정하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신청서 마감일 전에 간단한 계산법으로 개정될 확률이 높다는 여론이 많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 새로운 법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탕감액수 결정하는 문제나, 탕감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관된 입증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CPA나 기타 세금 전문가의 Service를 받기를 권장한다.

조 바이든의 세금 관련 정책 공약

Paul Joo, CPA

11월3일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금 관련 정책과 법령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중인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 정책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측의 세금 관련 정책 공약들 중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 법인 소득세 관련〉

1. 최고 소득세율의 인상: 개인소득 최고 세율이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됩니다. 세율 39.6%에 적용 받는 대상은 과세소득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 입니다. 최고 세율 39.6%는 트럼프 정부 이전의 최고 세율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세율 10%, 12%, 22%, 24%, 32%, 35% 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과세소득 40만불 이하의 경우 소득세율에 변화가 없습니다.

2. Itemized deduction 의 변화: TCJA 시행으로 폐지 되었던 Pease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 을 다시 시행합니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Itemized deduction 대부분의 세부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Cap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Cap의 대상은 과세소득 40만불 이상의 경우이며, 이들은 소득액의 28% 까지만 Itemized Deduction이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과세소득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여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정부 및 제방세(SALT) 공제 1만달러 상한선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Phases out the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deduction: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의 혜택 대상은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s), Partnerships, S-Corporation의 Owner 입니다. 과세소득 $400,000 이상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한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Deduction 20% 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과세 소득 40만불 이하의 경우 변함없이 2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Long-term capital gain 장기 양도소득 세율적용 제한: Long-term capital gain 에 대해서 현행 적용하는 15%/20% 의 고정세율을 최대 1백만불까지만 허용하고, 1백만불을 초과하는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일반소득 (39.6%) 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1년에 1백만불을 초과하는 소득액에 대해서는 최고 39.6%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Joint Committee on Taxation Report 에 따르면 현재 낮게 적용하고 있는 capital gain system 을 수정함으로서

연방정부 수입의 $127 billion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Capital gain 의 증가폭은 미국 역사상 가장큰 세금 개혁이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capital gain이 오르기 전에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이 됩니다.

5. Qualified dividend 배당수입 세율적용 제한: 현재 주주들이 법인에서 받는 dividend 배당금은 ordinary dividend 그리고 qualified dividend 로 분류가 됩니다. Ordinary dividend 는 ordinary income 으로 해당이 되며 qualified dividend가 될 경우 더 낮은 capital gain rates 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qualified dividend 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rdinary income 의 세율이 10% 또는 12 %일 경우 qualified dividend 의 세율 0 %; (2) Ordinary income 의 세율이 22% 에서 35 %일 경우 qualified dividend 의 세율 15 %; (3) 그리고 married filing jointly 의 인컴이 $496.601이 넘을 경우 qualified dividend 의 세율 20 % 입니다.

6.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인상:13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 데이케어 등에 맡길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었던 Child and Dependent Card Tax Credit 을 현 행법상으로는 1명의 자녀의 경우 최대 $3,000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6,00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명의 자녀의 경우 최대 $8,000 그리고 2인 이상의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000 까지 크레딧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7. Child Tax Credit (CTC) 인상: 6세 부터 17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2,000 에서 $3,00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3,600로 인상합니다. Qualifying children의 나이 제한도 16살에서 17살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수의 taxpayer들이 더 많은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뀌며, 세금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받는 것이 아니라 monthly payments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8. First-time homebuyer credit (첫번째 주택):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때 시행되었던 First-time homebuyer credit 을 다시 시행합니다. 새로운 정책 공약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최대 $15,000 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 2008년 부터 2010년도 시행되었던 credit 은 대부분 집 금액의 10% 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최대 $7,500 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million으로 대폭 인하 되었습니다. 또한 step-up in basis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도 45%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상속 인의 사망시의 시장 가치로 올려서 상속할 수 있었던 step-up in basis를 폐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구입하였었던 가격에서 capital gain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capital gain tax가 증가됩니다.

위에서 먼저 설명한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적용 제한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세금인상을 당장 2021년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지만, 세제개편은 2022년 이후부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전문가분들과 재산관리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9. C-Corporation 소득세율 인상:Tax Cuts and Jobs Act (TCJA)에 의해 35%에서 21%로 절감되었던 C-Corporation 법인세가 다시 28%로 인상됩니다.
또한, $100 million이상의 net income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15% Alternative Minimum Tax 가 다시 적용되어 집니다.

〈직원 임금 세금(Payroll tax)관련〉

1.$400,000 초과액부터 추가 payroll Tax 부과: 현재 2020년도 기준 $137,700($142,800 in 2021)이 될때 까지만 부과되었던 12.4%의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Employee Portion : 6.2% & Employer Portion : 6.2%)에 추가로 $400,000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12.4%의 사회 보장세금이 부과됩니다. $137,700에서 $400,000사이 금액은 현행과 같이 사회보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2가 $400,000인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8,537의 사회보장세금만 내면 되었지만 추후부터는 $16,263을 내게 되어지고, 고용주 에게도 동일한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되어 집니다.

〈상속, 증여 관련〉

평생 최대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 년도 개정세법 Tax Cut and Jobs Act (TCJA)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5년 사이까지는 이전보다 두배 높게 각 납세자마다 $11.58 million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23.16 million 으로 책정되었었습니다. 또한 step-up in basis를 상속세율 40% 와 함께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많은 세금 절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시에 부동상 및 증여, 상속세 면제 규정은 Tax Cut and Jobs Act (TCJA)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각 납세자당 $3.5 million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7

〈요약과 결론〉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측의 세금관련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세 관련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상위 1%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집중되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연 소득 40만불 이하의 납세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예상입니다.

상속,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액의 축소 및 세율인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 동안 상속관련 절세의 큰 몫을 차지하였던 Step-up 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Sally Kim, CPA

전세계적인 자연 재해 중 하나이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Pandemic(Covid-19) 상황에 정부는 여러가지 구제 법안을 내 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이다. 이 LOAN 은 SBA(Small Business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정부 재난 대책의 일환이며, 신청 사이트는 www.sba.gov/disaster이고, 신청 대상은 Self-employed individuals, Independent contractor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Small business의 owner 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business를 2020년 이전에 시작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Loan이 processing 되는 동안에 approval 유무에 관계없이, Advance 금액으로 직원 한 명 당 $1,000씩 최대 $10,000 의 갚지 않아도 되는 Forgiveness amount를 선지급했으며, 최대 $150,000 까지의 금액을 30년 장기 상환으로, 1년 동안 원금과 이자 payment 유예 가능하고, 1년 후부터 up to 30년동안 3.75% interest rate for small businesses; 2.75% for private non-profits)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작되었다.

추가로, Loan에 대해 Prepayment penalty도 없다. 이 Loan 은 기존의 fixed loan의 원금과 이자상환, 월급지급, 외상 매입금 또는 utility 등의 Operation expenses 즉, disaster 기간 동안에 관련 모든 payment이 가능하도록 했다.

EIDL의 지급 금액 산정은 매우 간단하다. (Gross Revenue – Cost of Goods Sold)/2의 금액이고, 최대 $150,000 까지 지급되었다. Real Estate의 lease 또는 Rent의 경우, 일 년 Gross Rental Income total 금액과 $150,000 중 더 작은 금액이 Loan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만약 applicant 가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즈니스마다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즈니스당 최대 $150,000의 loan이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초에 소진되어 잠시 중단되었다가, 2차 지원금은 약 2달 후에 추가 시작되어 10/21/2020 에 expire 되었다. 추가 신청은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이미 신청이 들어간 Applicant들은 12/31/2020까지 계속 심사가 진행중이며, email 또는 전화로 미비 서류를

요청하거나 받고 있다.

보통,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분 확인이 안되거나, 비즈니스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Credit 이 현저하게 나쁜 경우 Denied letter를 받으신 owner 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Written Reconsideration request와 new supplemental information을 보내게 되면, 재 심사를 거쳐 loan을 받으신 경우도 많고, 2nd Denied letter를 받으신 경우에도 2차 재심사를 30일 내에 해서 2차까지의 Appeal을 거쳐 최종 loan을 받은 경우도 많다. 이미 신청된 EIDL loan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 1-800-659-2955 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를 통해 loan application number만 가지고 쉽게 문의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 Loan을 받았다면, pay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정부는 일 년 동안의 payment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billing notice는 이미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한다면 일 년을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이나 메일로 미리 payment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미리 payment을 시작한 Owner들에게는 나중 payment이나 이자가 하향 조정되도록 했다. 받은 Loan의 금액을 전부 갚고 싶다면, Online으로 payment 전부를 은행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30년 이전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경우, 또는 비즈니스의 주소가 이전되는 경우, 비즈니스를 다른 종류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심지어는 Loan을 받은 Owner가 사망하는 경우에 loan 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이슈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Supervisory Loan Officer" 에게 Requesting Approval을 받는다면, 굳이 loan을 당장 갚지 않고, Borrower 상태를 계속 유지 가능하다.
Loan의 금액이 $25,000 미만인 경우, 담보가 전혀 없으므로, 론을 갚지 못하거나 비즈니스를 닫더라도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하지만 $25,000 이상인 경우는 비즈니스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200,000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EIDL Loan을 갚지도 않아도 될 것이다.

추가로 앞으로도 많이 개정 세법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정권 아래 Covid-19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오너들과, Property를 가진 계신 분들을 위해, 위의 언급한 payment 관련 개선 rule을 비롯하여 다른 구제 법안들의 생성으로 인해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바램도 가져 본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이겨 내기

Michael Kang
Owner, Wakana Sushi

미국에 22년을 살며 9.11사태와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었지만 2020년의 코로나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남아를 강타하고 유럽, 그리고 미국 동부를 거쳐 저희들의 터전인 캘리포니아도 강습했습니다. 3월 중순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발동되고 급감하는 손님과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며 "세상이 왜 이래" 한탄도 해 보았고 절망도 하였지만 이 사태에서 살아남는 길을 찾게 되었 지요. 정부의 여러가지 부양책이 나오며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 2가지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첫째, 크레딧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크레딧 리포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채들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크레딧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담당 회계사 분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메일로 받아 컴퓨터에 보관했습니다. IRS, SBA, EDD 사이트를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며 새로운 뉴스와 시행안 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간 보고한 2018,19 년의 세금보고 서류를 철저히 공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란트를 주는 단체에 응모하고자 코로나가 저의 비지니스에 미친 영향들을 영문, 한글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기에 EIDL, PPP, EDD, GRANT 등 모든 혜택을 쉽게 받아,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넘기고, 정신없이 달려온 미국생활도 돌아보고 은퇴계획도 생각해 보며, 경제적 타격은 받았지만 오히려 정신적 여유는 조금 더 찾은 듯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1,200불 체크도 예정일을 넘기며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쉽게 받게 되고 식당업계를 대상으로 한 모 은행의 지원책도 응모하여 받게 됩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로 큰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었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뉴스, 웹사이트, 유투브를 살피니,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전문가 분들도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곤 이 상황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3월 말 경 발표한 EIDL은 두 가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GRANT로 10,000불을 준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작성 서류 또한 너무 간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익일 입금된다던 10,000불은 일주일 정도 후에 종업원 수에 따른 금액을 받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EIDL LOAN에 대한 이메일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EXCELLENT한 CREDIT 때문에 SBA는 상당 금액을 승인하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PPP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미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기에 주거래 은행을 통해 이 또한 손쉽게 받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실업급여입니다. 엘에이에서 15년 식당업을 해오며 EDD를 신청할 이유도 없었고, 종업원들도 장기 근무를 해서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접하던 중 PU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희 같은 자영업자, 스몰비지니스 오너, 긱워커 등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UA 시행일이 4월 28일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일찍이 UI ONLINE에서 어카운트를 만들었고, PUA ONLINE OPEN시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EDD에 접속하여 저와 집사람의 실업급여 신청을 30분 이내 끝나고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름이나 가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유럽은 2차 확산이 시작되었고, 미국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7월 25일로 중단된 FPUC($600) 9월 5일로 끝난 LWA ($300)이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합니다. 정부의 2차 경기 부양책은 여러가지 이유로 타결이 미루어 지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하니 어느 덧 세무, 회계, 법률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특히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라디오 서울 아침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 지난 4월부터 매주 목요일 패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하며 책임감이 생기고 올바른 정보를 찾고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니, 그간 알고 있던 잡식이 지식으로 변하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인사를 하실 때 봉사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2021년도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다면 잘 대처해 나가리라 봅니다. 모두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모든 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 분들이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조금 더 되새기시길 바라며.

다운타운서 식당업에 종사하는 코로나는 몸소 겪은 소상공인이 ....

지금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 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보상과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00)943-4555

Garden Grove HQ 714.537.5000 | Los Angeles 213.368.0001 | San Diego 858.877.0843 | Auburn 334.759.6211 | Atlanta 770.291.2038

COVID-19 and disaster loss deduction under IRC Sec. 165(i)

Steven Y C Kang, CPA

Helplessness is one of the most common reactions to the current COVID-19. Much like a battle fatigue, after eight months of current pandemic, a nationally declared disaster, many of us feel hopeless. It reminded me of SaEeGoo, 429, disaster twenty-eight years ago.

On April 29, 1992, the city of Los Angeles city was on fire with Korean merchants receiving most of the blunt force of the riot, when the black community decided to burn, not just their own neighborhood but also Koreatown and surrounding areas.

I was both afraid and angry that Korean Americans were being offered as a sacrificial lamb to the black community's anger on Rodney King's verdict and a week earlier verdict on Soon Ja Du for killing a black teenager in her mini market. Many unsavory characters took advantage of the situation and simply burned and looted small businesses.

That evening a friend of mine, a fellow Sunday school teacher, called asking me to come to his mini market in South Central LA. He needed another person to defend his store and that he had extra guns. As I was walking out of the house, my wife grabbed my leg and said "Where are you going? You see these two littles ones (my sons were 3-year old and 1-year old at that time). Do you expect me to raise them by myself?".

To this day, I can still remember her words as if it is yesterday. I went back in the house and called my friend, telling him that I will not be coming and that his lif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ventory in his store. I also told him that I will help him in rebuilding his store through SBA disaster loan.

What my friend did after my call became news on TV and changed my view of disasters. I don't know whether it is because of my call or revelation that he received after prayer, my friend opened his store and invite his neighbors to come and take whatever they wanted and begged them not to burn his store. And his neighbors did just that. They took whatever they wanted but they did not burn his store, in fact, I was told that they guarded his store from getting burned.

After the riot, his store was the only one standing in two-mile radius and he made a killing after the riot. So, the moral of my story is that in a disaster, you just need to survive and when you come out on the other end and you are still in business, you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as you will have less competition.

This story has relevance today as we are in a midst of another disaster, COVID-19 pandemic. The president has declared national disaster on March 13, 2020, which opened federal assistance, including 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 SBA

Disaster Loans ("Disaster Loans"), Mainstreet Loan Program ("MSL") and little-know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65(i), Disaster Loss.

To survive the current disaster, small businesses must maintain liquidity. For this reason PPP/Disaster Loans/MSL, they all offer liquidity to struggling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based on federal taxes paid in the past.

IRC Sec. 165(i) also provides liquidity by accelerating 2020 casualty losses to 2019 tax year. The election of IRC Sec. 165(i) to 2020 casualty loss may get the business owners refund of income taxes that they have paid for 2019 tax year, and possibly earlier years, providing liquidity to weather the storm. If the casualty loss exceeds 2019 income, the resulting NOL can be carried back five years, as allowed in the CARES Act. Carryback of NOL to previous five years is mandatory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 if the CARES Act is being applied to 2019 tax return, unless an election is made to carry it forward.

In my home state of California, NOL carryback is not allowed as the state does not conform to the CARES Act. You should check with your own state to see whether it conforms to this CARES Act provision. Even without the state tax refund, a successful business person could receive refund of 25% to 39.6% of their income taxes paid to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means if he/she gets refund of their five years' worth of federal income taxes, then the federal refunds could be 125% to 198% of their income, enough liquidity to survive until the return of normalcy.

Since we just got done with the extended due dates for filing of income tax returns, you may be wondering about the applicability of IRC Sec. 165(i) to 2019 tax year, which were just completed. Fortunately, the IRS allows the affected taxpayers to amend their 2019 tax return by January 15, 2021 (six months after the original due date of July 15, 2020, without considering extension), to claim refunds under IRC Sec. 165(i).

In 1992, I overcame my helplessness and hopelessness by getting involved with KACPA. At that time, I had little to do with Koreatown, other than Korean church where I met my wife.

I was trying to become an American, distancing myself from immigrant life. I called BongSup Chang, CPA, who then was the president of KACPA, to explain to him about Sec. 165(i) and how it could help Korean American merchants in gaining liquidity to survive the disaster. He graciously invited me to come to KACPA meeting to explain about IRC Sec. 165(i). That was the start of my involvement with KACPA, eventually serving as its 31st president.

The weeks following April 29, 1992, along with many KACPA members, I volunteered my time, taking a week off from work, to help Korean American merchants in getting refunds of taxes that they have paid in previous years and applying for SBA disaster loan.

That experience was a turning point for me as an immigrant to this country, as I was contributing to Koreans' American experience and I overcame helplessness by helping others, which I believe, we are called to do, as it is not all about me in this selfish world.

팬데믹 상황인 2020년의 비지니스 절세 방안

Justin C. Oh, CPA

올해는 유독 혼동스러운 한해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지 사회적 경제적 혼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적용되는 세법까지도 그러하다. 트럼프 행정하에 입법화된 TCJA (Tax Cuts and Jobs Act)의 상당부분이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안에 의해 수정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예기되는 세법의 변화까지 염두하고 2020년 연말에는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오너에게 어떤 절세 방안을 들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 하는 걸 고민해야 하는 한해이기도 하다.

물론 올해 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세법의 변화가 플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세의 기본 방침은 당해년도의 소득을 차기년도로 이월시킴과 동시에 공제항목을 당해년도에 실행하므로써 현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미래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에 재 검토가 다시 필요한 사항이다. 거기에 세법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절세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하에 팬데믹의 상황에서 올해 적용되는 비지니스의 절세 방법을 한정된 지면상 일반적인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간략히 설명하자면,

1. 비지니스 이자공제: 2018년 부터 새로 적용되는 정부 감세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 에 의하면 비지니스의 이자공제는 일반적으로 비지니스에서 창출된 이자소득과 세소득 (Taxable Income)의 30%까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과거 3년의 평균 총 매출이 2천6백만달러 이하인 비지니스의 경우 30%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 매출이 이를 넘지 않는 비지니스는 이자비용의 100%를 2020년에 공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 물론, 30%의 제한으로 인해 비공제가 된 이자의 부분은 이월되어 영구적으로 소멸될때까지 쓸 수 있게 된다.

2.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공제: TCJA 법안은 새로운 개념의 내용인 QBI 공제라는 혁신적 안건으로 20%까지의 추가적 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개인이 자영사업자나 S 코퍼레이션 또는 파트너쉽, LLC를 이용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정 서비스업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을 통해 소득이 창출될 경우에는 고소득인 경우 공제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특정 서비스업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납세자인 경우의 연말플랜은 절세의 기본 전략인

소득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거나 비용을 극대화하여 특정 서비스업의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연말이 지난 시점에서의 절세 방안은 비지니스에서 은퇴 연금 (Retirement Plan)의 불입등을 통하여 소득을 줄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순영업손실 (Net Operating Loss (NOL)): 트럼프의 TCJA의해 2018년 부터 적용하게된 순영업손실은 이월이 될 뿐 이를 과거로 소급해서 환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사용할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의 80%까지만을 허용하게 되어 있었다.
코비드19으로 시행된 CARES법안에 의하면 과거 5년까지를 거슬러 소급해서 적용,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을 시켜 사용할 경우에 당해 년도의 소득의 100%를 상쇄 시킬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영업손실이 발생 하는 비지니스가 어느때 보다 많으리라 생각 된다.

올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2015년으로 거슬러 그 당시에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TCJA 법안 전이므로 최고 세율이 기업은 39%, 개 인은 39.6% 로 환불을 금액이 TCJA가 적용되는 2018년 보다 더 많이 환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급적용하는 다른 항목들은 부동산 관련 감가상각, 비지니스 손실의 제한에 따른 비공제 항목의 허용, 및 위 1안에서 언급한 TCJA로 제한된 비지니스 이자 공제를 100% 쓸 수 있게됨으로써 비지니스 오너와의 상의를 통해 이를 정정보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4. 자산의 구입: 과거에는 새 (new) 자산의 구입시에만 50% 혜택을 주던 보너스 감가상각을 TCJA 으로 확대 적용되어 중고 (used) 자산 구입시에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년도에 10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구입시 조세법 179 조항을 적용하면 당해년도 104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비지니스 자산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시행하여 절세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위에 2안에 관련 특정 서비스 소득이 20%의 QBI 공제를 다 쓸 수 없는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자산구입을 통한 179 조항의 적용과 보너스 감가상각은 연말에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차기 년도의 세율 변화를 염두하고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파티, 파티?, 연말 파티!: 코로나 시대에 무슨 말이며, 이게 무슨 절세 전략이냐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2018 년 부터 적용하는 TCJA는 식사비를 제외한 모든 접대와 유흥에 대한 비용을 공제 사항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따라서 그러한 반문은 타당한 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을 위해 여는 파티는 100%를 공제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업원에게 가상 (Virtual)의 파티를 열고 음식, 음료, 다과를 배달해 주면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배달하는 비용까지도 물론 100% 공제가 가능하다. 단,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종업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만 지키면 가능하다.

이 외 물론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열거하지 못한 PPP 탕감, TCJA 로 인해 최고 $18,100로 늘어난 자동차 구입시의 공제, 페이롤 택스의 지연, 채권의 대손처리, 장애인 고용 크레딧, 은퇴연금, HSA (Health Savings Account), 주식판매 및 창업을 통한 공제 등은 늘 기본적인 절세 방안으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 검토하여 이러한 연말 절세 방안들의 적용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연말 연시를 가상적이 될 수도 있지만 파티와 절세로 어려운 시대에 활력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남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코로나 사태 속 노동법의 동향

Elliott Kim 변호사

코로나사태 속 노동법의 동향을 살펴본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주를 이뤘던 것은 실업수당 관련, ESSENTIAL BUSINESS, ESSENTIAL WORKER의 해당여부와 사업체의 영업 가능 관련, 직원들의 임금과 스케줄 조절 관련, 가택 근무와 관련된 문의들이 쏟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방정부가 새로 내놓은 유급병가를 포함한 직원들의 LEAVE와 그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 관련이 주요 문의사항이 되더니 점차 코비드 검사 증가로 인한 확진자 발생, 사업체 방역, 사업체의 구조조정(LAY OFF)으로 인한 문제들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이 부분 소송과 클레임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은 크게 두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코로나 사태전에 사업체를 떠났던 직원들이 고용주의 과거 노동법 위반문제를 갖고 해오는 전통적인 내용의 소송과 클레임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서 이런 소송과 클레임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동기에 대해선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직원이 사업체와 헤어진 뒤 일 이년 뒤 노동법 소송과 클레임을 해오는 것은 코로나 사태전에도 간혹 있었지만 요즘은 더 흔해 보인다. 보통 노동법 공소시효가 최대 4년까지 (클레임의 종류마다 다르지만)이기 때문에 직장 떠난지 일년 뒤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다. 많은 경우 이런 직원들은 이미 직장상해보험을 걸어놓고 있다. 따라서 직장 상해보험클레임을 한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할 확률이 높다.

CPA들의 경우 의뢰인들이 보통 노동청이나 민사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냈을 때 한번쯤 검토해보는 기회가 있을거라고 본다. 노동청 임금클레임은 대부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위주의 클레임이다.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휴식시간 위반,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벌금, 간혹 가다 경비지불 청구를 요구해 온다. 보통 절차는 이단계나 삼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단계는 클레임이 들어갔다는 통지서가 오고 이단계는 컨퍼런스, 삼단계는 청문회라고 불리는 약식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각 노동청 지역마다 진행방식이 약간씩 틀린데 일단계나 이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컨퍼런스가 잡히고 거기서 직원측의 클레임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고 피해액을 계산해보고 고용주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시도를 한뒤 합의시도가 안되면 다음 일정으로 넘긴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모든 컨퍼런스가 전화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재판이 무기 연기된 상태다. 이슈가 아주 간략한 재판은 역시 전화로 진행 하고는 있다. 절차가 간략한 노동청 클레임과 달리 민사법원으로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소송은 절차도 나름대로 복잡하고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양측이 스스로 진행하고 방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소송의 내용은 일단 노동청에 들어오는 클레임 내용과 유사하다.

최저 임금, 오버타임, 식사 휴식시간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 최저 임금에 대한 벌금에다 보통 두가지 클레임 항목이 더 붙는다. 노동법 용어론 ITEMIZED WAGE STATEMENT 항목별 임금 명세서라고 불리는 소위 PAY STUB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PAY STUB 위반은 고용기간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자동으로 4천달러의 피해액을 요구한다. PAY STUB과 관련된 노동법은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따로 지면을 잡아서 해야할 만큼 캘리포니아주에선 직원들이 소송하기 아주 좋은 소재이다.

특히 PAY STUB 위반은 1년기간동안 직원 전체의 벌금을 부과하는 PAGA라는 법과도 연관이 아주 깊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이것을 붙이고 들어오는 이유는 임금 공소시효 3년을 4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항목 중 몇 가지만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보면 오버타임은 아직도 많은 고용주들이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면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된다고 착각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오버타임 면제에 대해 아주 제한을 두고 있다. 샐러리와 시간당의 구분이 아니라 EXEMPT와 NONEXEMPT의 구분이 선행되야 한다.

W2와 1099의 구분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AB5로 인해 1099에 대한 제약이 더 심하다. 식사와 휴식 시간 만큼 캘리포니아 주법상 고용주에게 불리한 법이 없다. 노동법은 정해진 시간범위안에 10분의 휴식을 직원에게 주게 돼있다. 식사의 경우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30분이란 식사시간이 법이 정한 시간내에 주어지고 식사 시간을 직원이 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가 이슈다.

식사와 휴식 관련도 PAY STUB처럼 따로 지면을 잡아야 할 만큼 커다란 TOPIC 이다. 이런 임금 관련 클레임 항목에 성희롱, 부당 해고, 차별 등을 붙여 들어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이런 항목만으로 소송을 해온다. 특히 부당 해고와 차별은 서로가 연결돼 있다. 아시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령, 성별, 인종, 임신, 장애, 종교등 사업장에서의 차별이 금해져 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부당 해고 차별 분야이고 이 분야가 코로나로 인한 노동법 클레임 소송의 두번째 양상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업체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할 때 LAY OFF에 선별되는 직원을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차별 부당 해고 소송에 말려들게 된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차별소송 중 상해보험 신청을 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직원이 해고됐을때 아니면 평소 지병이 있는 직원을 해고 했을때 장애 차별 소송이 발생해 왔다. 이런 류의 소송은 고용주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거액에 합의할 수 밖에 없는, 고용주에게 심대한 재정 타격을 주는 소송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선 코로나를 이유로 장애 차별과 부당 해고를 해온다. 또 해고되는 직원들 중 연령이 많을때 (40세이상) 연령 차별과 부당 해고로 걸고 들어오기 쉽다. 민사소송과 함께 코로나 사태 속에 늘어나고 있는 클레임이 산재 클레임이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클레임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고를 겪는 고용주들은 자칫 노동법 클레임과 소송까지 떠안아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법률생활과 시대적 도전

조민선 변호사/공인회계사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되어 전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팬데믹(pandemic)을 넘어 엔데믹(endemic) 으로 가고 있다. 백신이 나와도 이를 완전 퇴치할 수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판단들도 나오고 있다.

일상생활 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생소한 현상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는 예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가장 기본적인 인간 행동 뿐 일 사소한 행위 즉 마스크를 쓰느냐 하는 일도 양심적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를 넘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원천적인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지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겨 났으며, 철저한 개인 영역의 보루였던 종교 생활 조차도 새로운 임시법과 행정 명령의 위반의 테두리 안을 넘나들고 있다.

고소, 대응, 증거 수집, 증인 심문, 재판, 평결 등이 거의 모든 절차들이 화상이나 전화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판사는 물론 변론인과 참여인 모두를 낯설게 하고 있다. 특히 IT에 능통치 않거나 일면 거부감이 있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특히 심리적인 부담감은 상당하며, 전통적인 법률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면하여 판단하고 예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앞에 놓여진 IT기기 앞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진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 대면 재판 시대에서 많은 면에서 압도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주류 변호사들을 상대해 겨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 토론, 이로 단련되어온 철학적인 일관된 사고, 그리고 이를 표현해서 써본 많은 글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스피치로 표현할 수 있는 실력과 상당한 도전 정신이 필요했다.

더구나 큰 재판들은 상대 전문가들이 최고의 실력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리한 케이스라도 쉽게 이기기가 힘들어 오랜 기간 쌓여진 철학과 신념, 그 분야의 강한 리더십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승소하기란 쉽지 않았다.

대면 재판에서는 형식상 기존이론이 편향되기 일수인 엄격한 행정판사 앞에서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려는 시도는 힘을 발휘 못하고, 수많은 배심원, 혹은 방청객 앞에서 영화에서 보듯 유려하게 변론하는 백인 변호사 앞에서는 주눅들고, 인종적 편견과 정치적 옳음이라는 불문율에 혹독한 반대 심문하기도 여의치 않게 하는 상대방 앞에서 머뭇거리곤 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서면변론, 증거수집, 증인심문, 판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강하고 신념에 찬 새로운 해석으로
비대면 재판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듣지도 못하던 세계 최고수준의 영어를 경탄할 만큼 철학적으로 구사하던 판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랜마크 판결을 이끌어 낸다든지, 대형소송에서 전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대 역전승을 거두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이제 오랜 세월 미국땅에 뿌리박고 살지 않아 주류사회에서 진가를 발휘 못했던 이민 1세대 전문가, 2세대 전문가들에게도 호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서면변론, 증거수집, 증인심문, 판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강하고 신념에 찬 새로운 해석으로 비대면 재판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성능 좋은 신형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스피커폰이 잘 작동되는 스마트폰 속으로, 내가 공부하고 분석한 이론과 논리를 바탕으로 사건과 연계해서 멋진 문장으로 써내려 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변론에서 대면의 두려움들 없이 철저한 신념과 완강한 법해석으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상대방의 전유물이었던 그 영화 같은 대사를 웅변하듯이 읽어 내려가며 굴지의 상대방 변호사나 정부측 대리인의 논리를 차근차근 밟으며, 혹독하고 예리한 판사에 보다 더 잘 호소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새로운 도전과 사명의 시대가 되고 있다. 세금 추징 재판과 기타 많은 소송들에서 억울함에도 씁쓸히 물러서야 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 혹은 방어해서 공정한 정의와 권리를 이민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 코로나로 초래된 비대면 시대가 적극적이고 신념에 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그리고 많은 전문인들에게 전환적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현실도 이제 영화처럼 극적일 수 있다.

COVID-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CARES법에 따라서 개정된 파산법과 파산에 대한 진실과 오해

이승호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와 비즈니스의 일시적 폐쇄는 역사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파산을 담당하는 연방 법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인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에 의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파산법에 대한 운영도 바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파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파산에 대한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CARES 법에 의해서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1.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 거래도 중지되고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거나 더 나가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파산 후에 은행 구좌를 얻는다거나 사업을 다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시민권을 받는다든가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도 없다.

오해 #2.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산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조차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따라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채무 면제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대신 채무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해 #3. 파산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을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빌린 빚만 갚고 파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파산하기 전에 여러 채권자 중 일부의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파산법에서는 채권자 우대라 규정한다. 법정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채무 면제를 받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법에서 규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서 자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정 관리인의 임무 중 한 가지는 채권자 중 다른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파산 전에 받았을 경우 이러한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다. 이러한 산법 절차를 채권자 우대 소송이라고 한다.

[CARES 법에서 개정된 파산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체나 개인을 돕기 위해서 CARES 법에서 파산 진행과 절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CARES 법에서 다뤄진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첫째, CARES 법에 의하여 개정되는 파산법은 일시적인 법으로 2021년 3월 27일 까지만 적용된다.

둘째, 챕터 13 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 법원에서 허가된 구조조정 페이먼트를 이미 내고 있는 파산 신청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업이나 비즈니스의 피해가 있을 경우 기존에 내고 있는 구조조정 페이먼트를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셋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자의 원본 서명이 필요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부터 원본 서명이 없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유지 차원에서 파산 신청자의 원본 서명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 관재인이 주재하는 채권자 회의에 파산 신청자는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을 하는 절차가 중단 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10일까지는 채권자 회의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화 통신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섯째, 기업의 구조조정 파산인 챕터 11에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Subchapter 5 파산의 경우 채무금액의 규모가 $2,725,625에서 $7,500,000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기존의 기준에서는 Subchapter 5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도 채무금액의 한도가 $7,500,000으로 늘어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본적으로 Subchapter 5는 챕터 11의 혜택을 받으면서 절차를 간소화한 파산의 종류다.

기존의 챕터 11을 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Subchapter 5가 없을 시절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때문에 챕터 11은 규모가 큰 기업 외에는 가능하지 않았으나 간소해진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의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업의 위기가 왔을 경우, Subchapter 5 파산은 기업들에게 필요없는 사업장 정리나 채무의 집행 금지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장기 분할 지불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의 종류와 재정상태에 따라서 탕감받는 것도 가능하다.

여섯째,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 수당이나 다른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러한 수입은 파산을 신청할 때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파산을 신청할 때,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챕터 7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받은 정부의 보조금이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매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파산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파산에 대한 거부감이나 오해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지 않기 보다는 파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채 탕감이나 사업 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서 검토하기를 바란다.

부동산투자 세금혜택과 DST 부동산

차비호, CPA

미국부동산 투자에는 세금 혜택이 많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임대 수입과 시가 상승 두가지이며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미국부동산 세법은 이 두가지 수익에 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연기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재산 증식이 유리하고 상속시 큰 도움이 된다.

미국 부동산은 거주용 주택과 투자용 부동산으로 구분되는데 거주용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적용되고 나머지 소유 부동산은 세법상 모두 투자용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아래 도표에 적용되는 여러 세금 혜택은 투자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투자용 부동산은 개인 명의나 법인체 형태로 소유할 수 있고 LLC, LP, Corporations, TIC, DST 등 여러 형태 로의 신티케이션 형태로 소유 가능하다. 이중에 DST (Delaware Statutory Trust) 부동산은 미국세청 (IRS) 이 2004년에 Revenue Ruling 2004-86를 발표함으로 생긴 새로운 부동산 지분 투자 형태로 아래 도표에 있는 모든 세금 혜택을 누릴수 있는 유일한 지분투자이다.
특히 세금연기와 세금면제를 동시에 누릴수 있는 1031 Exchange 가 허용되며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으로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 투자를 피하던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 감가상각 (Depreciation)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가가 상승하는데 미국세법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낡아 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정하기에 건물가의 일부를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어 임대수입과 상쇄할 수 있기에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팔고 재투자시 양도소득세금 연기 (1031 Exchange)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소유하면 대부분의 경우 시가가 상승한다. 이는 임대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인플레이션 따라 상승하기에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장기 소유한 부동산을 팔면 대부분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을 한부분까지도 양도소득에 포함이 되어 양도소득 세금이 막대할 수가 있다.

	미국 투자용 부동산 세금혜택	실제 혜택	DST 부동산
1	감가상각 (Depreciation)	임대수입 비과세	YES
2	부동산을 팔고 재투자시 양도소득세금 연기 (1031 Exchange)	복리증식 효과	YES
3	은행융자 (Leverage)	시가상승 혜택 극대화	YES
4	상속시 양도소득세 면제 (Step-up Tax Basis)	감가상각 혜택, 시가상승 비과세	YES
5	상속세 면제 (2020년 부부 $23.16 Million, 약 270억원)	대부분의 납세자는 상속세 비과세	YES

그러나 미국세법은 해당 부동산을 팔고 발생하는 모든 자금을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면 판 부동산에서 생긴 양도소득 세금(감가상각 포함)을 연기해 주는 1031 Exchange 라는 세법이 있다. 최대 40% 정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다음 부동산에 재투자할 수 있음으로 복리 증식의 개념으로 부동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이다.
1031 Exchange는 회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평생 여러번 활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 증식에는 가장 유리한 세법이다.

3. 은행융자 (Leverage)

미국에서 투자 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다. 일반 적으로 주식이나 금 등 현물에 투자하면 은행 융자가 어렵지만 부동산은 구입가에 약 50% 정도는 은행에서 빌릴수 있다. 이는 Leverage (지렛대) 효과를 발생하여 투자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DST 부동산 경우도 대부분 50% 정도 은행 융자가 가능하여 100만달러 투자하면 전체적으로는 200만달러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는 Leverage (은행돈)를 활용하여 감가 상각 경비 혜택과 시가 상승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게 해준다.

4. 상속시 양도소득세 면제 (Step-up Tax Basis)

미국의 부동산 부자들은 재투자를 (1031 Exchange)통해 양도소득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증식하며 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후세에게 남긴다. 상속할 경우 상속인이 죽은 날짜의 싯가로 부동산의 세금 기준이 재평가 (Step-up Tax Basis) 되기에 그동안 연기해 왔던 양도소득 세금과 감가상각 세금이 말소가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상속세면제 (2020년 부부 $23.16 Million, 약 270억원)

2020년 미국의 상속세 면제액은 부부인 경우 $23.16 Million, 약 270억원이며 개인인 경우는 절반인 $11.58 Million, 약 135억원이다. 그리고 상속을 하지 않고 증여를 할 경우에도 상속세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선택 권이 있기에 살아생전 재산을 나누어 주어도 위와 같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죽기 전에 Living Trust (생전신탁) 을 만들어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체금액을 신탁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된다.

Tax Planning Tool related to Depreciation

Cost Segregation related to Residential & Non-residental Real Property, Leasehold improvements/ Renovation, and New Construction

Phillip Son, CPA

Cost Segregation Study is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costs associated with a construction/improvements or acquisition project. The objective is to maximize available depreciation benefits by segregating and documenting the cost of all short-life properties (5-year, 7-year, 15-year vs 27.5-year or 39-year assets) identified as part of the capitalized cost of the project or purchase. Proper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through Cost Segregation Analyses can significantly reduce federal income tax liabilities. Cost Segregation Study breaks down construction and acquisition costs and allocates them to specific categories such as tangible personal property, land improvements and real property.

TCJA - Recent Changes in Depreciation Related Rules

Date of Asset purchased or improved	On or before 9/27/2017	9/28/2017 – 12/31/2017	1/1/2018 to 12/31/2023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 (QLI)	15 year depreciation + bonus (50%)	15 year depreciation + bonus (100%)	No QLI allowed to be treated as QIP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39 year depreciation + bonus (50%)	15 year depreciation + bonus (100%)	15 year depreciation + bonus (100%)
Bonus Depreciation for equal or less than 20-year assets	50%	100%	
Bonus Depreciation applies	Only to the new improvements (No acquired properties)	To new improvements as well as acquired properties	
What it means	Cost segregation adds value by increasing the portions assigned to faster depreciation schedules.	Without cost segregation, depreciation is limited to mostly 39 or 27.5 years Cost segregation can identify 15, 7, 5 year assets With 100% Bonus Depreciation, first year tax savings will dramatically increase.	

Especially recent changes in CARES Act made it possible to retroactive adjustments for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was formerly 39-year property for 2018 and onward; now this is 15-year property and eligible for 100% bonus depreciation. Improvement must be Sec. 1250 Property. (Reg 1.168(b)-1(a)5(i)) and excludes expenses attributable to the enlargement of the building, elevators, escalators, or internal structural framework of the building.

Cost Segregation Study is a tax planning strategy that savvy investors employ to accelerate depreciation deductions on their properties. The 2018 Tax Cuts & Jobs Act (TCJA) provides 100% bonus depreciation in the first year for qualified assets (20 year or less). By accelerating certain depreciation, Cost Segregation Study reduces current tax liability while increasing the cash flow thereby allowing investors to seize opportunities for other investments.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is defined:

- Improvement to interior portion of a building which is **nonresidential real property**

- ➢ Expenses attributable to the enlargement of the building, elevators, escalators, or internal structural framework of the building **are excluded**

15-year Life/100% Bonus on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has retroactive application to 2018. There are multiple options for taxpayers to make retroactive adjustments for previously-filed returns:

- ➢ A superseding return is a return filed subsequent to the originally-filed return and filed within the filing period (including extensions) or amend the 2019 tax return.
- ➢ File Form 3115, Application for Change in Accounting Method, on the 2020 return and leave 2019 as-is.
- ➢ The Designated Change Number (DCN) for QIP adjustments is 244 (Rev. Proc. 2020-25).
- ➢ Applies to QIP placed in service after December 31, 2017, for the 2018, 2019 or 2020 tax year.
- ➢ Not affected by other accounting method changes (e.g., DCN 7).
- ➢ 5-Year Carryback for NOLs Can Open Doors for New Projects
  - Allows taxpayers to carryback NOLs arising in a taxable year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and before January 1, 2021 to the preceding 5 years before the NOL tax year (2018, 2019 & 2020)
  - Temporarily repeals the 80% taxable income limitation through the year 2020 – an NOL may offset 100% of taxable income.
  - Choice of amended returns vs change of method to maximize the tax refunds of NOLs (pick your optimal carryback year)
  - Carrybacks are all or nothing concept and must follow ordering rules:
    - 2018 NOL – carried back first to 2013, then 2014, etc.
    - 2019 NOL – carried back first to 2014, then 2015, etc.
    - 2020 NOL – carried back first to 2015, then 2016, etc.

- ➢ For quick refunds, taxpayers may file for Form 1139 for corporations and Form 1045 for flow through losses.
- ➢ IRS has provided Fax numbers: Form 1139 – 884-249-6236 & Form 1045 – 844-249-6237.
- ➢ Considerations of NOL – Section 179 Limitations, Section 199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Section 170 Charitable contribution limitations, reduction in general business credits.

5버킷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은퇴 자산 관리

박남희 이사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은퇴 자산 관리는 퇴직 전 자산 축적을 위한 저축과 퇴직 후 원활한 인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인출 스케줄을 최우선 기준에 두고 금융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흔히 '체계적 인출' 전략으로 불린다. 이는 일정한 인출 금액 또는 자산의 안정된 인출률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모든 자산군에 기계적인 분산 투자를 시행, 관리하는 것이다.

이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출 스케줄에 맞춘 자산 관리의 단점은 장기 투자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보수적인 투자로 일관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은퇴 자산 축적의 실패 문제이다.

성공적인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금융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버킷 투자 전략은 그 대안 중 하나이다.

5버킷 투자 전략

버킷 투자는 고객의 투자기간과 위험성향에 맞게 대응된 버킷(자산군)들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각각의 버킷은 각기 다른 투자기간과 위험성향을 지닌다. 소득 마련, 자산 성장, 위험 및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장단기 목표에 맞게 각 버킷에 자산을 배분하고 재조정하게 된다.

자산배분에 필수적인 버킷은 1) 평생소득(Lifetime Income and Protection), 2) 유동성자산(Fixed income and Short-term Cash), 3) 균형성장자산(Protected Growth), 4) 장기성장자산(Long-term Growth), 5) 대체투자자산(Alternatives) 등 5가지다.

첫번째, 평생소득 버킷은 은퇴 후 필수 생활비와 의료비 및 요양비에 대응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종신소득을 보완하는 자산이다.

두번째, 유동성 버킷은 다른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인컴을 발생시키는 투자 또는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 자산이다.

세번째는 균형성장 버킷이다.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되, 변동성 및 하락을 제한하기 위한 헷지와 기술적 대응전략을 수반한다. 또한 두번째 버킷의 자산 가치의 하락 또는 추가 인컴 필요 시 두번째 버킷의 보완을 도울 수 있다.

네번째 장기성장 버킷은 은퇴자산의 초과성장을 위해 준비한다. 이는 편안한 지출을 위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성장 분야 및 성장 지역 자산에 전략적으로 배분, 장기투자해 투자성과를 극대화한다.

다섯째, 대체투자 버킷은 성장과 인컴에 대한 잠재력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제공한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지칭하며, 금리나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적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첫번째 버킷과 두번째 버킷을 보완한 추가 인컴을 제공할 수 있다.
버킷투자 전략은 자산을 활용 목적과 투자 기간에 따라 분리하고,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며 운용한다는 측면 에서 매우 유용한 투자 전략이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건전한 재무 전략을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재무 전략이 없거나 현재 재정 계획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투자원칙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재정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메시지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및 투자 자문 서비스는 등록된 브로커 딜러이며 투자 자문 회사인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를 통해 제공됩니다. FINRA / SIPC 회원. 캘리포니아에서의 보험 서비스 는 회사의 DBA 이름인 MAWM Insurance Solutions 을 통해 제공됩니다.

CA License No. 0N08558. 보장은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에 의거합니다.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인 투자보다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전문투자자 에게만 적합합니다.

대체 투자는 기존 투자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하며 완전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서는 안됩니다.

대체투자는 세금에 효율적이지 않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체 투자는 기존 투자보다 수수료가 높으며 투자 손실 또는 이익의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높은 레버리지와 투기 투자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한 것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Warren Buffett) 절세 비법–장기 양도 소득세 (Long Term Capital Gain Tax)

Peter M. Sohn, CPA
Partner of Dow & Sohn, CPAs

Coivd-19으로 인해 미국 실물 경제가 아직 정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그동안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조차 로빈후드 등의 주식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동안 한인들의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치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젊은 한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에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보다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주식투자가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는 사람들도 테슬라와 애플 등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은 주식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것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주식을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주식 판매시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unrealized gain)으로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주식을 판매하여 양도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양도 소득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상쇄하고 남은 손실이 있다면 최대 $3,000까지 세금공제 처리 후 다음해로 넘겨서(carry over) 처리하게 된다. 실제 세금 납부는 본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양도 소득 발생시 바로 예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해 초에 개인 세금보고시에 다른 양도 손실 또는 일반 소득들과 함께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납부하게 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해당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단기 양도 소득(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ordinary income)과 합쳐서 일반 소득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 소득 세율은 연방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7%까지 부과된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한 수익은 장기 양도 소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서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세금보고시 과세소득이 부부공동보고 기준으로 $80,000까지는 장기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80,000에서

$496,600까지는 15%의 양도소득 세율이 그리고 $496,6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에게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장기 양도 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혜택에 워렌 버핏이 자기의 비서보다도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두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정 규정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의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 수익으로 간주해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자격이 되지 않는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배당금을 재투자(reinvest)한 경우에도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주식세금보고 시에는 주식 거래에 이용한 증권회사(Brokerage)에서 발행한 1099 양식을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 1099양식에는 1년 간의 배당금 내역(1099-DIV)과 수익과 손실상황을 포함한 주식 거래내역(1099-B)이 상세히 담겨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과 손실을 스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주의할 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꼭 세금보고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식 매매가 발생할 경우 1099양식이 미국세청(IRS)에도 전달되고, 납세자가 주식 구입비용을 본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미국세청은 주식 총 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KSGA, LLP
kang·song·gandhi·anderson

Personal Attention with International Resources

Steven Y.C. Kang, CPA (강영찬)

Mike Song, CPA (송두용)

Jay S. Kim, CPA (김장식)

CPACONNECT
A Companion Alliance to CPAmerica International

www.ksgallp.com | steve@ksgallp.com | msong@ksgallp.com | jskim@ksgallp.com

17918 Pioneer Blvd. #200 Artesia, CA 90701 (562) 865-2727

조세법원(Tax Court)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법원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

Gary Son, CPA

만약 납세자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사람들은 국세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의제기 절차는 국세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은 자신들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내린 결론을 바꾸기 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미연방조세법원(이하 '조세법원')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일반적인 조세 문제를 담당하는 조세법원은 국세청과 관련이 없는 연방 법원이기 때문에 조세법원 앞에서는 국세청 또한 납세자와 동일한 당사자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손을 떠나 조세법원에 맡겨진다.

조세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배심원단이 없으며 판사 앞에서 양측 당사자가 해당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다. 납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자신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체 케이스 중에서 약 45%는 변호사 없이 납세자가 직접 변론을 한다. 해마다 조세법원에 30,000건에 이르는 소가 제기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재판을 통하지 않고, 납세자와 국세청의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
전국 납세자보호관에 따르면, 조세법원에 제기되는 소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주택 판매 대금이 정확히 신고되지 않았거나, 소명되는 소득에 대한 기록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에 소를 제기한 납세자의 약 25%가 승소 내지 일부 승소를 통해 페널티를 경감 받는다. 2012년의 한 사례에서는 (Neff v. Comm'r) 납세자가 조세전문가로부터 받은 상담을 믿었음을 정당한 항변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는 건강 문제 (Wright v. Comm'r) 또는 허리케인 (Johnson v. Comm'r)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조세법원을 통해 부과된 페널티를 면제받은 바 있다.

2. 비즈니스와 관련한 비용 또한 분쟁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신고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 납세자가 이를 구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 조세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용도로 공제된 비용 중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판단, 비즈니스와 취미에 대한 구분, 그리고 홈 오피스 비용 계산, 등도 조세법원에 자주 등장하지만, 대체로 납세자가 국세청 보다 입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승소하는 비율이 2% 정도에 그친다.

3. 납세자가 세금 보고에서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지만 기부처가

공제에 적격한지, 기부액이 시장가격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또는 기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세청이 거절할 때가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 중 약 20%가 조세법원을 통해 공제를 다시 인정받는다.

4.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책임도 공동(jointly and severally)으로 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부부 중 일방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다른 일방에 대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법원은 각 배우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약 33%가 조세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았다.

5.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강제 제출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우세한 입장이다.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나듯,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관련 세법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은퇴연금계좌(IRA)관련 절세 전략

Jean Kwon, CPA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QCD)

우리 교민들은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많이 하며 종교 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부한 금액을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Itemize Deduction (항목별공제) 에 포함하여 세금 공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2017 Tax Cuts and Job Act (TCJA) 세법 발안 이후로 Standard Deduction (기본공제) 금액이 거의 두배로 증가하여 도네이션 및 기타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항목들을 합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기본공제) 금액보다 크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이 Itemized Deduction (항목별공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감소하였다.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가 있는 70 ½ 세 이상의 납세자들이 사용 가능한 절세 방법이 있다. 교회나 성당의 헌금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을 IRA Account에서 인출 시 바로 기부하여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이 아닌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줄여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Qualified Charitable Deduction 이라고 칭하며 금액은 최대 $100,000 까지 (부부의 경우 최대 $200,000) 가능하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발안된 CARES Act 에 의하면 IRA account 에서의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는 건너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RMD 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QCD에 관한 전략은 2020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이 전략은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메디케어 Part B와 D를 받으시는 분들께 프리미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 (AGI)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QCD를 통하여 도네이션을 하면서 AGI를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부액에서 $300까지는 Itemized deduction (항목별공제) 이 아닌 과세 소득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법안이 CARES Act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IRA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도 2020년 세금 보고시 담당 회계사와 논의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Back Door Roth IRA

많은 한인분들이 은퇴 자금 및 절세 전략으로 401K 이외에도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설립한다. 401K 는 고용주가 가장 흔하게 설립하는 종업원을 위한 은퇴 연금 계좌다. 이에 반하여 IRA는 개인이 직장을 통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은퇴 연금 계좌다.

이러한 IRA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바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이다.

Traditional IRA는 개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특정 금액을 개인 은퇴 연금 계좌 (IRA account) 에 저축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개인 당 최대 $6,000 씩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1,000 을 추가로 저축 할 수 있다.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다른 은퇴 자금 계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 (AGI) 에 따라서 그 해에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금액 이상 소득을 낸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반면 Roth IRA는 계좌를 설립하는데 특정한 나이 제한이 없고 납세자의 AGI가 2020년 기준 $196,000 (Married Filing Jointly) 미만인 경우 $6,000 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196,000-$206,000 인 경우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 점차 줄면서 $206,000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넣을 수 없게 된다.

Roth IRA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1,000 을 추가로 저축이 가능하다.
여기서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저축할 때 세금 공제를 받지만 그 후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은 미래에 돈을 인출할 때 부담하게 된다. 반면 Roth IRA의 경우 돈을 넣을 때는 세금 공제가 안 되지만 저축 후 투자된 계좌의 가치 상승과 은퇴 후 인출할 때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 셈이다. 즉 Roth IRA 계좌의 가치가 현재보다 2배 에서 3배가 되어도 인출 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보통 Traditional IRA에 저축하는 이유는 은퇴 후 소득이 현재보다 줄어서 세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가정 하에 하는 것이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현재와 동일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세금을 내고 인출 시 세금부담이 없는 Roth IRA에 저축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고소득자의 경우 Traditional IRA에서 어차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Roth IRA 저축이 불가능한 경우 Back Door Roth IRA를 통해서 Traditional IRA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Roth IRA로 전환한 후 그 안에서 투자한 것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하여 Net Operating Loss (NOL)가 발생하였고 이미 Traditional IRA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Roth IRA로 전환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소득이 NOL로 인하여 절세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세금 보고 시 NOL 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Back door Roth IRA를 고려해 보는 것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납세자의 나이 및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사 및 재정자문가와 상담 후 이 전략을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면세법인의 세무보고

장상용 공인회계사

면세법인에는 church 등 신앙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주정부에 Corporation,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의 형태로 Not for Profit Organization을 등록한 후 수입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하여 IRS에 Exempt Application이라 하는 Form 1023, Form 1024등을 제출하여 tax exemption status를 후에 취득한 경우의 2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 등 종교 기관의 경우 영리 수입이 없는 한 따로 tax filing할 필요는 없지만 grant나 타인으로부터 donation을 받은 경우에 IRS와 주정부에 tax emption status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Tax Year 혹은 liquidation, dissolution, termination 후 5개월 15일까지 tax filing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들은 인력들이 Volunteer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고 donor 등 일반 후원자로부터의 후원금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첫번째 due date에 filing을 못할 시 Form 8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and Exempt Organization Return)을 제출하면 6개월 뒤인 11월 15일(회계년도가 Calendar Year인 경우)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현재 Failure-to-File Penalty는 하루에 $20씩으로 되어있으며 $10,500혹은 gross receipts의 5%중 적은 금액이 최고 한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면세법인, 단체의 Tax Form은 일반 영리법인이 제출하는 폼과는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의 내용이 제품을 판매 한다던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는 수입이 아니고 면세법인이 제대로 보고하는냐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990N, 990-EZ, 990의 3가지 양식이 있는데 해당 단체의 1년치 수입규모나 자산규모에 따라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990N은 Electronic Notice (e-Postcard) for Tax-Exempt Organizations Not Required to File Form라 하며 1년의 총수입이 $50,000 이하일 경우에 사용하게 되며 e-file을 전제로 합니다. 1년 수입이 $50,000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이에 해당되기에 기본적인 정보인 EIN (Employer Idenification Number, 9개의 숫자로 된 비지니스 Tax ID)와 법적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Form 990-EZ는 Short Form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라는 정식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Short Form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기는 하지만 bookkeeping을 정식으로 하고 있을 적에나

면세법인, 단체의 Tax Form은 일반 영리법인이 제출하는 폼과는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작성이 가능한 폼입니다. 폼의 페이지수는 얼마 안되지만 일반 영리회사들이 사용하는 Form 112나 1120-S가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필요합니다.

Form 990은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라고 하는데 Form 990N이나 Form 990-EZ가 해당 안되는 연수입 $200,000이상이나 연말기준의 자산액이 $500,000이상의 단체에 해당됩니다.

이 양식은 Form 990-EZ에서 요구하였던 해당단체의 수입과 지출 및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California에서는 Form 199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 Form 199N (California e-Postcard)와 Form 109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을 사용하여 filing을 하게 됩니다. Form 199은 연평균수입이 $50,000이 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 Form 199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IRS의 경우와 같이 간단히 e-filing을 할 수 있는 Form 199N (California e-Postcard)로 하게 됩니다. Form 109은 business income이 $1,00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이 됩니다. 이 폼들의 Filing due date는 IRS와 같은 Tax Year 종료 후 5개월 15일로 되어 있으나 Form 199및 199N의 경우는 연장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수입이 $1,000이상이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Form109는 6 months extension을 허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은 일반회사들과는 달리 Fund Based Accounting을 합니다. 가령 컴퓨터를 $1,000에 샀을 경우 일반회사들은 그것을 자산에 기록하고 Depreciation 하곤 하지만 비영리기관은 금액 전부를 비용항목에 집어넣어 회계처리를 하며 관리를 위하여 상징적인 금액만 자산계정에 기록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관리를 위한 상징적인 금액도 대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personal property (자동차, 컴퓨터 등의 movable assets)에 대한 자산관리는 미흡하였습니다. 자산규모가 꽤 큰 단체도 그러하니 소규모의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자산관리대장(Asset Control Sheet)등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면세법인의 세무보고에 대하여 언급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면세법인이 아무리 작게 운영된다고 하여도 재무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시 재무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히 기록하여야 Donor나 Grant를 제공하는 측에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이혼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 처분

Lynda Chung 변호사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CALIFORNIA 나 한국이 다 이혼율이 높다. 본인이 가정문제 상담사가 아니라 변호사라 왜 거의 반의 결혼이 깨지는 지는 아직 정답을 못 찾았다 (궁금은 하지만). 결혼이란 게 꼭 이혼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마음은 아무리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해도 법적으론 결혼이 끝났다.
그러므로 생존한 사람은 당장 그 다음날이라도 결혼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이혼으로 끝나냐, 아니면 한 사람이 사망을 해서 결혼이 종말이 된것이냐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다르다. 또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별거를 오래 했었어도 이혼소송 추진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한번도 이혼소송 신청 안한 것처럼 이혼 수송은 끝이 나 버렸다.

유명한 인사들 중에 가끔 보면 부인을 미워하고 이혼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사망할 경우 만약 남편이 유산준비를 안 해놓고 돌아가셨을 경우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때문에 두사람이 결혼하고나서 축적한 재산은 따로 유산 상속으로 받은 separate property 나, 아니면 결혼 전에 사두었던 재산 빼고 나머지 공유하던 재산은 미망인한테 다 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재산을 둘이서 100프로 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망하기 전에 돌아가실 분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도록 유언장을 썼을 경우는 당연히 유언장대로 재산 분배가 된다.

만약 돌아가신 남편이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라서 좋은 pension plan 이 있었을 경우 이혼 수속 준비하다 돌아가셔도 미망인은 평생 펜션을 받는 경우도 봤다.

10년 전에 Sandra Bullock이 나왔던 Speed 영화에서 악역을 한 돌아가신 영화배우 Dennis Hopper는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예술가였고 그림 소장도 상당히 있었다.
하지만 세번째가 네번째가 되는 와이프 Victoria 랑 이혼 소송 중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망인과 전처에서 논 자식들과 몇년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나갔다.

물론 유명인사도 재산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젤 중요한 재산이 집이다. 집의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Living Trust 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경우는 James Kim and Mary Kim, Husband and Wife, as their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해 두면 한 사람이 사망 후 생존자가 간단한 서류만 등록하고 probate court 갈 필요 없이 명의 이전이 된다.
하지만 James Kim and Mary Kim, as Joint Tenants로 해도

이혼으로 끝나냐, 아니면 한 사람이 사망을 해서 결혼이 종말이 된것이냐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다르다. 또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별거를 오래 했었어도 이혼소송 추진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한번도 이혼소송 신청 안한 것처럼 이혼소송은 끝이 나 버렸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망의 간단히 명의 이전이 된다. 하지만 Joint tenants 로 했을 때 step up in bases 를 두 번 받을 수 없으므로 Husband and Wife as their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 부부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땐 더 낫다. 물론 living trust 를 준비해서 자식들이 부모 가고 나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혼 후 재혼해서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조심 안하고 그냥 무조건 living trust 에 재산을 다 집어 놀 경우 들어간 재산이 두번째 결혼한 부부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전번 결혼, 이혼하면서 받은 separate property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다 고령시대 로 들어가니까 크지 않은 재산이라도 잘 정돈해두고 있는 게 중요하다.

대학진학 학자금 개요
(College Financial Aid Overview)

Andrew C. Kang, CPA

매년 11월 30일까지 가주 12학년생들의 주립대 입학 지원 마감날이며 12월 말까지 혹은 1월 중순까지 사립대 입학 지원서 마감을 서두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학교 진학 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1.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의 신청기간은 12학년이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Cal Grant 관계상 가주 마감일은 3월 2일입니다. 학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수입이며 그 다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순수 자산입니다. 올해 신청에는 2019년 세금 보고서와 수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FAFSA는 크게 정부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종류(4년제, 2년제, 사립, 공립, 시립 등)에 상관없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입학 신청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청조건을 알아봅니다.

1. FAFSA 신청 학생의 신분 자격: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을 허락 받은 자, 난민 인정을 받은 자.
2.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3. 마약에 관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4. 전에 받았던 학비융자가 체납 안된 경우
5. 남학생 신청자인 경우 나이가 18세에서 25세 안에 해당이 되면, 연방 병무청에 등록을 하셔야 보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군복무가 의무제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6. 진학하는 대학에 각 학기마다 최소한 6학점 (per semester) 이상을 등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7. FAFSA는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FAFSA 신청비용은 없습니다.

CSS Profile

우리가 알고 있는 약 350개의 사립 대학과 장학금을 수여하는 다수의 민간 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FAFSA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신청서인 CSS(College Scholarship Service)Profiling을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CSS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FAFSA와 다르게 CSS 프로파일은 각 학교의 자체 학자금 보조를 결정하는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AFSA는 신청 기간이 항상 동일하지만 CSS 프로파일은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CSS 프로파일은 신청비용이

있습니다. 입학신청과 같이 보조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감날짜를 넘기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금 신청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Corona pandemic 때문에 많은 학교들도 재정적 부담을 많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께서 신청 마감날짜 등을 감안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Pandemic 때문에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릴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 주립대학 학비와 기숙사비의 비율은 45:55 사립학교는 70: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역은 입학허가서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약 3월말경). 특히 올해에는 Pandemic 때문에 작년 2019 년과 비교해 수입이 크게 줄어든 부모님들이 많은데 보조금액 기준은 2019년 수입이라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갈 학교가 결정된 후에 해당 학교에 보조금액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aid appeal letter). 2008년 금융위기때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금 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서류와 정보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California는 가주 졸업생이 가주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불체 신분일지라도 연방 보조금은 받을 수 없으나 가주시행령 AB540 신청을 통해 주정부 보조금과 사립 학교의 경우 주정부 보조금 외 해당 학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각 학교마다 하셔야 합니다.

'늙은' 베르테르의 슬픔

김장식 공인회계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1774) 은 독일의 문호 괴테가 스물 다섯에 썼다. 이뤄질 수 없는 사랑으로 고통을 받는 친구와 괴테 자신의 짝사랑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으로 18세기 당시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스트셀러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친구의 죽음을 담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다. 이 소설이 발표된 이후 '베르테르의 효과'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설 속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만 74세에 19세 아가씨를 죽도록 사랑해 딱지를 맞고 70대 노인 '늙은 베르테르'의 사랑은 '마리엔바트의 비가'(Marienbader Elegie)에 반영돼 있다. 74세였던 괴테는 요양을 위해 휴양지인 마리엔바트에 머물렀으며 여기서 19살의 울리케란 소녀를 만나 애착과 정렬에 사로잡혀 결국 청혼하게 되고 거절당하자 이별의 고통에 몸서리치며 이 비가를 썼고 그는 이 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 시를 계속 낭독하며 고통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는 구상에서 완성까지 60년이 걸린 대작 '파우스트' 집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그는 '파우스트'를 완성한 이듬해 바이마르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누구나 늙는다. 우아하게 늙고 싶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대기업 임원 상대의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노년기에 이성 친구를 사귄다면 젊고 탄력있는 젊은 애인이 좋으세요? 아님, 동년배를 사귀시겠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왕이면 젊은 연인"이었다 한다.

이 의사에 의하면 노년기의 젊은 애인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의 그림자를 더 키운다고 한다. 대신에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동년배의 배우자나 연인이 노년기 행복 적응의 정답이란 얘기다. 노년기의 젊은 애인은 되레 노인들을 더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이고 잘 늙어가는 것, 한걸음 나아가 잘 죽는 것이 행복의 정답이란다. 늙은 베르테르들이 곱씹어 들어야 할 말이다.

수년전 사업으로 성공하여 꽤 많은데 재산을 모은 나의 client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잃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다. 정식 웨딩 마치를 올린 것이다. 행복은 잠시, 가끔 만나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업체를 재혼한 아내에게 맡겼더니 돈이 새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이 분도 돌아가셨다. 아마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았다. 늙은 베르테르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경고이다.

늙은 베르테르 괴테는 구혼을 했다가 거절당한 아픔을 극복하려는 열정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이 연애시 '비가'를 남겼다.

"꽃이 모두 져버린 이날
다시 만나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네앞에 두팔을 벌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
그녀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와
두팔로 너를 안아 주리라."

팬더믹 이후 나의 하루 일과

안병찬 공인회계사

오전 6시, Alexa는 내가 좋아하는 Beegie Adair Trio의 Autumn Leaves 로 나를 깨워준다. Alexa가 정리해 주는 오늘 뉴스 브리핑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한다.

'Thank you Alexa' 하고는 홈 오피스에 들어가서 오늘의 일과를 점검하고, 오전에 처리할 내용을 살펴 본다. 나의 색소폰 연주 Misty가 Echo Dot으로부터 들려온다.
미팅을 위해서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차를 대기 시킨다. 집 현관문 앞에는 나의 애마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차에 다가서자, 차문은 열리고, 나는 운전석에 앉는다. 사무실로 오토파일럿을 셋업한다. 이미 Spotify 로 셋업해 놓은 가벼운 Jazz 가 차안을 달구어 온다. 차는 사무실로 향하고, 나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잠시 후 있을 미팅 내용을 Havana Radio에서 제공하는 가벼운 음악을 들으면서 점검한다.

사무실에 도착한다. 사무실 문에 있는 홍체인식기가 나를 인식하고 문을 열어준다. 사무실에는 두명의 직원이 눈에 들어온다. Remote로 일하다가, 사무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서 나온 직원들이다. 오랜만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는 "Hey, Google, play Chopin Polonaise in G minor". Google Dot은 쇼팽의 폴리네즈를 들려준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크다. 나는 소리를 좀 낮추라고 명령하고, 미팅을 위해서 Conference Room 으로 들어 간다.

Conference Room에는 Remote로 참가자들을 보기 위한 Smart TV가 있고, 가운데는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다. 미팅할 고객이 도착해서 간단한 안부를 묻고, 미팅에 참여할 회계사들을 Remote로 참여시킨다. 화면에는 두명의 회계사들이 미팅에 참여하고, 고객과 나는 대면으로 미팅을 가진다. 필요한 자료는 스마트 TV 화면으로 띄우고 공유한다. 고객이 자료를 Hard Copy로 보기를 원해서 Remote로 참여하는 회계사 한명이 회사내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트한다.

그리고 해당자료를 PDF file로 고객에게 이멜로 보낸다. 미팅 결과는 메모해서 Cloud에 저장하고 나와 참여 회계사들이 공유한다. 미팅이 끝난 후 나는 iPad로 법인의 회계사들이 남겨 놓은 메시지를 점검한 후 사무실에 있는 내 컴퓨터를 킨다.
결제를 원하는 서류들을 검토한다.
각 회계사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해당 파일에 메모하고 저장해 둔다.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뜬다. 고객 업무와 관련되어 회계사들이 미팅 중인데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다. 나는 보내온 자료를 Cloud 로 같이 공유하면서 미팅에 참여한다. 필요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메모하면서 미팅이 진행된다. 미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최종 마무리된 내용은 담당회계사가 고객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나와 공유한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뜬다. 타주에 있는 고객

으로부터 급히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자료는 아직 받은 것이 없지만, 고객으로부터 호환 가능한 파일로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를 받아 변환한 후 바로 우리 시스템으로 자동 입력하고, 자동 으로 Bank Reconciliation 까지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담당 회계사로부터 몇 가지 필요한 Journal Entry만 입력하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보내온다. 나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사무실을 나가야 하니, 마무리되는 대로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실을 나선다.

네비게이션을 다음 일정 장소로 맞추고 오토 파일럿으로 출발한다. 얼마 가지 않아서 메시지와 함께 Financial Statement 가 완성되었으니, 결제해 달라는 요청이 온다.

차는 Freeway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차의 대쉬보드에 큰 화면의 스크린을 통해서 Financial Statement를 검토한다. 늘 그래왔듯이, 결제하는 동안 차안에서는 Smooth Jazz가 은은하게 연주되고 있다. 나는 내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채 다 마시기도 전에 검토를 마치고, 간단한 메모와 함께 담당 회계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는 사이에 차는 목적지에 도착을 알린다. 차가 적당한 자리에 파킹이 되어서 나는 차에서 내려 미팅 장소로 이동한다.

이 회사 사무실은 별다른 가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 흰색으로 꾸며져 있고, 군데 군데 엷은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인다. 아마 보이스 인식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깨끗했다. 회사 대표는 "하이 빅스비, TV 켜 주세요". 곧 화면에는 베트남에 있는 지사 직원이 인사를 한다. 미팅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오후 5시다.

나는 집으로 오토파일럿을 셋업하고 출발한다. 잠시 스마트폰으로 오늘 있었던 뉴스를 읽는데, 피곤이 밀려온다. 잠시 눈을 붙였었는데 차가 멈춘다. 집에 도착한 것이다.

의사의 정기적인 운동의 권장도 있고 해서,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늘 운동할 때 그랬듯이 삼성 워치3을 손에 착용한다. 어느정도 걸으니까, 시계가 울린다. 확인해 보니, 신발 모습의 아이콘과 함께 박수를 치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난다. 운동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다. 운동을 마치니 운동량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의자에 앉아 손목에 찬 시계를 통해서 나의 혈압을 재 본다. 75 에 125 이다. 정상이다. 갈증이 나서 냉장고로 간다. 내일 날씨를 체크해 보니, 80도 정도의 쾌적한 날이다. 그런데 냉장고에 밀크의 유효기간이 내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긴급 뉴스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뉴스를 확인하고, 밀크 등 필요한 물품의 리스트를 집사람 스마트폰으로 전송시킨다.

마침 외출에서 들어오는 길에 잠시 마켓에 들린다는 집사람에게 보내 준 것이다. 나는 와인을 한잔 마시면서, 오늘 내 은행계좌 잔액과 지출내역을 살펴 본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내역과 함께 회사 계좌에 대한 내역도 검토한다. 회계정리 App을 통해서 대략 이달에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 본다. 침대에 눕는다. 수면을 도와주는 은은한 음악소리가 Google Home을 통해서 들려온다.

KACPA Events Photo Gallery

2019 Christmas Party

2020 Tax Seminar for
Korean Community & Monthly Seminar

2020 Officers M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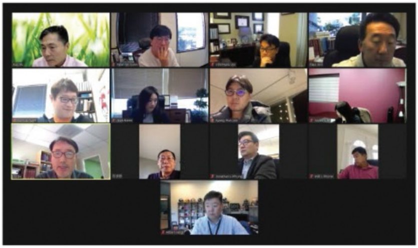

2020 Monthly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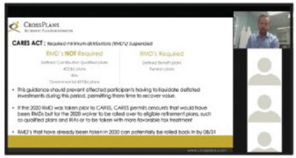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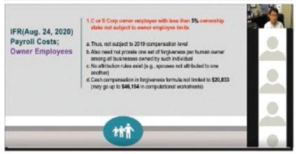

2020 Officers Outing

2020-2021 KACPA Officers

JUSTIN C. OH
PRESIDENT

ALBERT J. JANG
VICE PRESIDENT

HAN WOOK JO
SECRETARY

JONATHAN LEE
VICE SECRETARY

LEANNE BAE
TREASURER

PAUL JOO
SEMINAR DIRECTOR

JEAN KWON
SEMINAR DIRECTOR

SANG YONG CHANG
MEMBER BENEFITS AND OUT-REACH DIRECTOR

PETER M. SOHN
PUBLICATIONS DIRECTOR

KYUNG HUN LEE
PUBLICATIONS DIRECTOR

JOONSOON CHOI
PUBLIC RELATIONSHIP AND COMMUNITY SERVICE DIRECTOR

SAMUEL NAM
PUBLIC RELATIONSHIP AND COMMUNITY SERVICE DIRECTOR

STEPHAN S. LEE
EDUCATION DIRECTOR

WILLIAM KIM
WEBSITE & BROADCAST DIRECTOR

SALLY KIM
WEBSITE & BROADCAST DIRECTOR

2020-2021 KACPA Committee Members

JINSUNG HAHN
EXECUTIVE

JAMES M. CHA
EXECUTIVE

ANN H. LEE
EXECUTIVE

ALEX LEE
SCHOLARSHIP

JAMES Y. LEE
SCHOLARSHIP

KIHO CHOI
AUDIT

2020-2021 KACPA Board of Director List

1	ALBERT D. JANG, CPAB4	18	JINSUNG HAHN, CPA	35	TONG WON KO, CPA
2	ANN H. LEE, CPA	19	JONG HWAN KWAK, CPA	36	ALBERT J. JANG, CPA
3	BYUNG CHAN AHN, CPA	20	JUN CHANG, CPA	37	HANWOOK JO, CPA
4	CHARLES C. LIM, CPA	21	KENNETH C. HAN, CPA	38	JOONSOON CHOI, CPA
5	CHARLES LEE, CPA	22	KEVIN CHUN, CPA	39	JUSTIN C. OH, CPA
6	CHRISTIE CHU, CPA	23	KIHO CHOI, CPA	40	WILLIAM Y. KIM, CPA
7	CHESTER (CHULHYUNG) BAE, CPA	24	KYUNG MOO KIM, CPA	41	JEAN KWON, CPA
8	DAVID S. SHIN, CPA	25	LAWRENCE S. JEON, CPA	42	JONATHAN LEE, CPA
9	DOUGLAS DONGWAN CHONG, CPA	26	MINNIE LEE, CPA	43	KYUNG HUN LEE, CPA
10	GARY J. SON, CPA	27	SEUNG YOL KIM, CPA	44	LEANNE BAE, CPA
11	HENRY S. CHI, CPA	28	SHIN YONG KANG, CPA	45	PAUL S. JOO, CPA
12	HOON KIM, CPA	29	SOH YUN PARK, CPA	46	PETER MYUNGSHIN SOHN, CPA
13	JAE SUN SONG, CPA	30	SPENCER HONG, CPA	47	PHILLIP SON
14	JAMES M. CHA, CPA	31	STANLEY CHA, CPA	48	SALLY KIM, CPA
15	JAMES Y. LEE, CPA	32	STEPHANIE BAE, CPA	49	SAMUEL K. NAM, CPA
16	JANE KIM, CPA	33	STEVEN Y. C. KANG, CPA	50	SANG YONG CHANG, CPA
17	JINNIE (JINHAENG) KANG, CPA	34	SUNG BUM CHO, CPA	51	STEPHAN SUNGHYUK LEE, CPA

Your Best Investment Starts here

Herapia LLC

cbs PROPERTY GROUP, LLC

ChoiBoSung TaeSung

BoSung Sambo Ace Top

Lana Choi CEO / Ph.D Business Marketing

436 S. Virgil Avenue Suite 506, Los Angeles California 90020 Website: www.herapia.com
Tel: (323)402-0882 Fax: (323)402-0874 E-Mail: herapiallc@gmail.com

*Pic contributed by Freepix

CKP,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ONSULTANTS

CKP 회계법인은

- 미국 최대 한국계 회계법인이며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US의 멤버펌입니다
-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법변호사, 경제학자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450여 한국계 기업이 CKP 고객입니다
- 지난 25년간 멕시코진출 한국기업의 영업, 회계 및 조세문제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 해외자산 및 소득신고, 국제간 자산이전 및 증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www.ckpcpas.com
www.ckpcjtax.com

OFFICES IN:

LOS ANGELES, CA
IRVINE, CA
SAN FRANCISCO, CA
SAN DIEGO, CA
FORT LEE, NJ
MONTGOMERY, AL
AUBURN, AL
ATLANTA, GA
SEOUL, KOREA

An independently owned member
RSM US Alliance

RSM

38년동안 변함없이
재정관리 및 은퇴/상속계획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계획▶상속계획▶리빙 트러스트▶기업상속 및 베니핏 프로그램 (401K, Pension Plan)
▶뮤추얼 펀드 투자 및 관리▶생명보험▶장기 간호보험▶장애소득보험
▶건강보험▶비영리 단체 기부(CRT) 및 절세 계획▶대학 학자금 설계
▶Special Needs Trust & Conservatorship

3700 Wilshire Blvd. Suite 1009,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52-6222 / Cell: (213) 792-9100
Email: jonkim@financialguide.com
https://www.jonkimadvisor.com

김종식

Jongsik (Jon) Kim, FSCP®, FSS, LUTCF®, CLTC
Financial Services Certified Professional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Certified in Long-Term Care
Agency Managing Director
Special Care Planner
CA Lic. #0638640

MassMutual
Fraser Financial Group

Fraser Financial Group은 세계적 경영 다각화를 이루는 금융서비스 그룹인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기업(메스뮤츄얼)의 에이전시로서 광범위한 재정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메스뮤츄얼의 기업목표는 제정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넓은 안목으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추어진 다양한 범위의 재정적 해결점을 오래도록 증진시키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입니다. 메스뮤츄얼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재정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MassMutual Financial Group is a marketing name for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 Mutual)and its affiliated companies and sales representatives. 8383 Wilshire Blvd. Suite 600, Beverly Hills, CA 90211 [T] 323-965-6300 Insurance offered through Mass Mutual and other fine companies.